ISSN 2093-5714
2010년 상반기(통권 제3호)

여성과 인권

특집 |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을 보다
현장연구 | 탈성매매여성의 동료활동, 현재와 미래 전망
논문리뷰
이슈&피플
문화평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여성과 인권

2010년 상반기(통권 제3호)

책머리에 / 이화영

특집 |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을 보다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대처방안 / 홍봉선 8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과
성구매자 처벌의 현실 / 부정주 24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 성윤숙 34
새로운 위기청소년 지원의 현장, 그 가능성을 보다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 진란영 60

현장연구 | 탈성매매 여성의 동료활동, 현재와 미래 전망

탈성매매 여성의 도전, 동료활동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 정책·사업팀 68
장애인 동료활동의 의미 / 송정문 79
[좌담회] 동료활동의 미래를 말하다 86
현장활동가 나, 그리고 우리들을 말하다 / 키싱구라미 102

논문리뷰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범위의 확장으로 / 정경숙 107
어떤 남자들이 성구매를 하는가? / 최대헌 114
성을 사는 남성들
: 그들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 / 신혜수 118

이슈&피플

미국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황의 이해
/「Children of the Night」대표 로이스 리(Lois Lee) 인터뷰 130
성매매 수요(Demand)에 주목하라
/「Stop Demand Foundation」대표 데니스 리치(Denise Ritchie) 인터뷰 137

문화평론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 사회를 만들다 / 오재림 144
수백만의 다시 찾은 꽃목걸이를 기대하며 / 원민경 149

| 책머리에

여성인권의 이슈와 정책적 과제, 다양한 문제의 출발지점은 청소년의 인권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청소년의 가출, 탈학교, 성폭력, 비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 횡적, 종적으로 연결되어 성인의 시기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가정에서의 폭력과 성폭력 등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성매매라는 종착지에 이르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의 특집을 청소년 성매매 문제로 삼은 것은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다. 원인과 실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 매체의 발달과 함께 그 방법에 있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9년 말 서울 지역 가출 여중고생 1,779명 중 175명(10%)이 성매매로 검거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는 단순히 검거된 숫자에 한한 것이다.

『여성과 인권』 3호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해결방안과 대안을 고민하고 제안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을 보다”를 <특집>의 화두로 삼았다. 홍봉선의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대처방안」은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환경적 요인을 가족, 학교, 친구, 사회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주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과 성구매자 처벌의 현실」에서 실제 수사과정과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하며 우리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성구매자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를 현장의 경험을 통해 역설하고 있다. 성윤숙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은 국내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지지중심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진란영은 「새로운 위기청소년 지원의 현장, 그 가능성을 보다」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의 대안사례로서 범숙

학교와 늘푸른자립학교의 케이스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특집은 기존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더욱 발전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현장연구>에서는 "탈성매매 여성 동료활동"을 주제로 성매매 방지 영역에서의 동료활동이 어떻게 시작·변화·발전되어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 방지 현장의 동료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탈성매매 여성의 도전, 동료활동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는 동료활동의 발전을 위한 현재적 위치와 평가를 엿볼 수 있다. 송정문의 「장애인 동료활동의 의미」는 동료활동이 가장 활발한 영역 중 하나인 장애인 동료활동을 통해 성매매 방지 영역의 동료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료활동의 미래를 말하다」와 키싱구라미의 「현장활동가 나, 그리고 우리들을 말하다」는 동료활동가가 직접 말하는 동료활동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미래로써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동료활동가와 성매매 방지 현장이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과 인권』 3호는 2009년 출간 된 성매매를 주제로 한 연구물을 찾아서 <논문리뷰>를 시도하였고, 미국의 대표적인 성매매청소년 지원 기관인 「Children of the Night」의 대표 로이스 리(Lois Lee)와 뉴질랜드에서 성매매 방지 활동 기관인 「Stop Demand Foundation」의 데니스 리치(Denis Ritchie) 대표와의 인터뷰를 담아 <이슈&피플>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의 인권을 다룬 저서 및 출판물을 리뷰한 <문화평론>도 게재하였다.

성매매 방지 및 여성인권을 주제로 한 전문 연구지가 척박한 현실에서 『여성과 인권』은 실질적인 성매매 방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전문지로 지속적인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다. 현장의 상황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한 경험적 연구 및 이론화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 성매매 방지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0년 6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이화영

특집

특집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을 보다**

-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대처방안 | 홍봉선
-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과 성구매자 처벌의 현실 | 부정주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 성윤숙
- 새로운 위기청소년 지원의 현장, 그 가능성을 보다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 진란영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대처방안

홍봉선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문제제기

청소년복지의 출발점은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이다. 나아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욕구와 의식이 청소년의 이해에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성적 행위의 가능성이 열어지는 세대이자 인간발달 과정에서 가장 왕성한 성적 에너지를 방출하는 시기(홍봉선·남미애, 2009)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이해와 관련행동이 그들의 현재 삶과 미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작금의 한국은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청소년들 삶의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원숙(2002)은 일반 청소년의 2%정도가 성매매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가출 및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 경험 비율이 20%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비행성이 있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33%가 성매매의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원숙 2002, 재인용).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으로 국가는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하여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성범죄자의 아동 관련 직종에의 취업제한제도를 마련하였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강화, 친고죄 삭제, 공소시효 정지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②)"에 처하도록 하여, 성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나기만 하여도 처벌되는 그루밍 처벌 제도를 갖추는 등 청소년 성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화 조치만으로는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적 강화가 청소년의 사회 복귀나 그들의 복지 증진과는 직접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 피해 및 예방은 성인의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자활의 욕을 고취시키는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원고는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성매매의 관점 및 관련 이론[1)]

1) 청소년 성매매의 관점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관점은 첫째, 그들을 위험에 처해 있는(at-risk)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성매매 청소년이 정상적 사회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으나 사회로의 재편입 또는 통합이 가능한 자로 간주하여 통제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자, 청소년 복지와 여성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학대 희생자이며 성인과 다르게 처우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성매매와 관련된 기존 문헌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또는 성인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에는 크게 경제적 불평등(O'Connell-Davidson, 1998; Phoenix, 2001), 남자의 폭력, 남자의 권력(O'Neill, 1997)의 범주로 대별된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성매매 청소년이나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성착취 희생자인 청소년을 보호하는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제기한다(Ayre & Barrett, 2000). Donegan(1996)은 성매매 청소년의 처벌, 즉 범죄화가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자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린 청소년들이 사회

1) 본 장은 홍봉선·남미애(2007b)에서 상당부분 원용한 것임.

적 스티그마로부터 고통을 받게 한다고 본다.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를 성착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성매매 청소년을 범법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자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그들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나아가 성매매 예방을 위하여 성매매 청소년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의 성장발달권의 보장 등 청소년복지권 및 여성복지권의 향상, 재범방지, 여성범죄방지, 가족복지의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다.

2)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 및 탈출을 설명하는 이론

성매매의 역사가 길다고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왔고 주로 비행적 시각이나 실태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청소년 성매매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크게 성매매 유입에 대한 이론과 탈성매매에 대한 이론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1) 성매매로의 유입을 설명하는 이론

청소년이 성매매에 빠지게 되는 이유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다(Cusick, 2002). 하나는 또래 집단의 네트워크 결과로 성매매에 휘말려든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은 빈곤과 같은 개인적 경험과 지역적 상황 등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즉 정서적 취약성과 빈곤, 열악한 생활환경이 결합하여 성매매에 빠지게 된다고 본다(O'Neill, 1997; Melrose et al., 1999).

또 다른 관점은 청소년은 학대 성인에 의해 성매매 청소년으로 길러지고 성매매를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Barnardos, 1998). 이것은 학대와 희생에 노출되면서 야기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을 학대하는 성인에 대해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성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며 성매매 여성으로 길러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2) 성매매에서의 탈출을 설명하는 이론: 니드와 지지모델

니드와 지지모델은 영국의 Hester & Westmarland(2004)가 영국 성매매 청소년

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개발한 것으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한다.

MÅnsson & Hedlin(1998)은 1981년과 1995년 사이에 스웨덴에서 탈성매매한 23명의 여성과 질적 연구를 한 결과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해서 탈출하기 까지는 휩쓸림 → 올가미에 걸림 → 탈출 전 단계 → 탈출단계 → 탈출 후 단계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특히 성매매 청소년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에는 극도의 위기나 어려움, 혹은 외부 도움에 의해 긍정적인 경험이 없이는 자신들만의 힘으로 변화하기는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전환점(turning point), 역할변화(role change), 탈출행동(exit behavior)' 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 이론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변화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Hester & Westmarland(2004)는 이상과 같은 각 단계의 주요한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 단계, 혼돈 단계, 안정화 단계, 성매매로부터의 이동 단계로 세분화해서 개입 전략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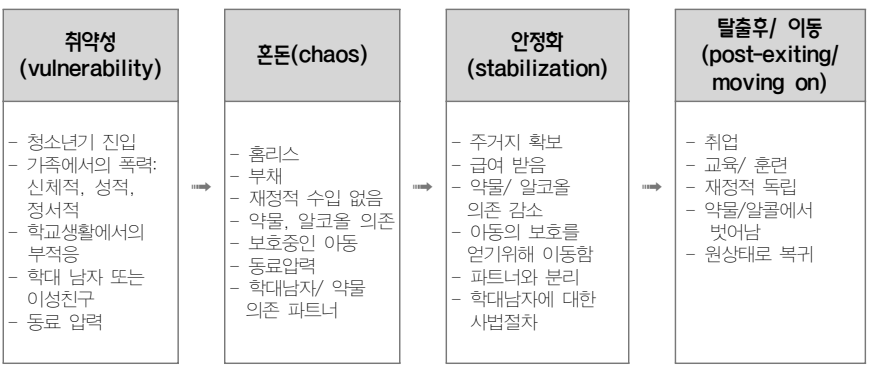

〈그림 1〉 니드와 지지 모델

3. 청소년 성매매 발생의 환경적 요인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은 가족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사회요인 등 크게

4가지의 환경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가족요인

성매매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결손가정인 경우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범죄에 매우 효과적인 억제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부모의 불화, 이혼, 가족간 불화, 애정결핍, 대화단절 등은 청소년 문제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 성매매 경험자 대부분이 가정의 기능적, 구조적 결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성혜,2001; Mcmullen,1987). 뿐만 아니라 가족지지 및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로부터의 인정(고성혜, 2000) 등 가족요인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져,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 부모의 부부관계, 경제소득 등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청소년의 성장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심한 경우에는 가출을 하게 되어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될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의 청소년 성매매 비율이 일반 청소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사실(고성혜, 2000; 성윤해, 2001; 정경숙, 2001; 남미애, 2001; 민영선, 2001)이 시사해 주듯이 가출은 청소년을 성매매에 빠져들게 하기 쉬운 중요한 요인이다.

2) 학교요인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생이며, 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입시위주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많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의 현실은 부정적인 청소년문화와 학교 중도탈락, 가출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성매매 또한 부정적 청소년문화 혹은 청소년문제의 결과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정규석·김영종, 2003).

Badgley(1984)와 Seng(1989)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들은 낮은 교육적 성취감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면 Schissel & Fedec(1999) 연구는 학업 성취도나 학교에 대한 태도와 성매매와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중퇴와 성매매와의 관계는 깊으며 특히 중퇴생의 학교로의 복귀는 성매

매로의 개입률을 월등히 낮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 학교의 민주성, 교사에 대한 애착정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이 낮을수록 여자청소년의 성비행이 높고(민무숙·김인숙, 1999: 92-93), 학교에 대한 성취도와 학업에 대한 헌신이 낮고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 높을수록 여자청소년의 성비행이 높다고 한다(김준호·김은경, 1995; 남미애, 2004).

이처럼 성매매 경험 청소년들은 성매매 유입 이전에 가정생활의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도 부적응하고, 그런 가운데 학교에서 교사와 동료로부터 소외되었으며 심지어 교칙위반으로 벌을 받거나 학업에 대한 성취도도 낮아 결국 중퇴할 확률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3) 친구요인

청소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과정을 경험하는 또래를 통해 심리적 인정과 지지를 받고, 가정 밖의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 그 가운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함께 하도록 동조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성인숙, 1999). 특히 청소년의 공식적인 성사회화 기제가 미흡한 한국 사회는 친구집단이 청소년의 성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동한다. 친구집단이 일탈 성향을 가진 비행집단일 경우 성과 관련된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반 청소년들보다 비행청소년들의 혼전 성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이인섭, 1987; 조미경, 2000에서 재인용)으로 나타나 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주위에 많을수록 성과 관련된 문제에 많이 노출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4) 사회요인

물질만능주의는 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10대 소녀들이 속칭 원조교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 낸 김시업(2000)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성윤리와 성가치의 하락현상 역시 성매매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회요인이다. 산업자본주의와 고속경제성장으로 성(性)산업이 번성하면서 성인 남성 위주의 퇴폐적인 성문화와 연령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성적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748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문

조와 이성식(1994)의 연구는 유해업소가 청소년 생활주변에 널리 산재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유인하거나 퇴폐 유흥행태를 일상화시키고 있다며 유해업소의 출입빈도가 증가할수록 성매매를 포함한 청소년 비행이 강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와 맥을 같이하면서 요즘 청소년은 과거에 비해 혼전순결이나 임신, 낙태 등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성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즐기고 드러내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향락성 아르바이트로서의 청소년 성매매가 청소년 사이에 많이 발견되는 것은 성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상의 유해문화 형성은 손쉽게 익명으로 청소년 성매매 거래를 증가시켰고 인터넷 유해사이트, 채팅, 전화방, 생활정보지 등이 청소년 성매매의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인터넷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정도, 채팅(고성혜, 2000; 정경숙, 2001; 박성동, 2001) 및 기타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 성매매 대처방안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과 근절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청소년 성매매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이용하는 성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다른 하나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복지제도의 확충을 통해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을 막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미래지향적 인식을 근간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상당한 투자와 조직체의 변화 등을 요구한다. 최소한 아래의 제도 마련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

최근에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법률적 처벌보다는 보호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향락 아르바이트적 성격이

강하고 자발적인 경향이 높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성착취의 심각성은 희석되고 성매매 청소년과 업주, 고객을 같은 공범관계로 접근하려는 생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성매매 청소년들의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구조적 제반요인에 의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강제되는 경향이 강하다(박미숙, 2000 : 1-2).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의 상품화는 단순한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청소년이 차지하는 지위의 변동과 위기를 의미한다(노혁, 2000 : 29). 결국 성매매 문제는 단지 여성의 도덕적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내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성매매 청소년이 학대의 피해자임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남미애, 2004).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는 학대나 성착취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복지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과 분리하여 청소년에 맞는 개입과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형태의 상업적 성착취도 경시되거나 수용되어서는 안 되며, 성산업 시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의 수요, 공급, 기회 등 모든 측면을 차단해야 한다(홍봉선, 2007).

2) 예방사업의 강조

모든 청소년 문제에서 강조되지만 청소년 성문제 및 성매매에 있어서의 예방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착취와 성매매 관련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하여 건강, 약물, 흡연, 관계 대처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성주체성[2]

2) 청소년 성주체성이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애정적 성행동의 관념적·실천적 총체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청소년의 성주체성 있는 행동이란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자존감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면서 성적 결정을 함에 있어 기존의 가부장적, 여남 차별적 관행과 보수화된 기성세대의 관점과 기대로부터 자유스러운 위치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완전 합일된 결정과 금전이나 현실성 없는 약속 등의 절대 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심적 부담과 책임을 온전하게 지는 것이다(홍봉선, 2002).

을 고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홍봉선, 2002). 교사, 간호사, 응급실, 성건강클리닉 등으로 구성된 공동 사정틀을 구성하여야 한다. 초기 청소년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을 사정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가출, 중퇴, 성매매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보다 다각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로 용돈해결(56.7%), 의식주 해결(20.0%)이 대다수를 차지함(국가청소년위원회, 2006)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 가정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과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

3) 조기개입 강화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함께 동반하고 부정적 사회적 인식과 낙인으로 인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은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이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은 첫째, 아웃리치의 강화 및 전담 youth worker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둘째, Drop-in의 확대 설치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Drop-in을 설치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간단한 간식제공, 콘돔, 약물치료, 건강관련 서비스, 상담, 교육, 훈련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취약한 사람들이 학대나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 보호체계에 있거나 퇴소한 아동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성매매 남자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에 따르면 남자 일반청소년이 성매매 제안을 받은 적은 4.0%였고 위기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이 제안을 받은 것은 11.3%이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중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3명 중 66.7%가 남자청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매매 남자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관련 법규에 성학대 등의 피해 대상에 남자 청소년이 포함되는 법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지서비스 강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지지적이며 전체적(holistic)이고 욕구 중심적이

어야 한다. 이는 성매매 예방에서부터 진입, 탈출, 사후관리까지 연속적, 지속적, 다기관간 협력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특히 성매매 청소년에 맞는 개별서비스(dedicated services), 1대 1 지지서비스, 약물, 알코올, 심리적 어려움, 정신건강, 성건강 등 건강서비스, 주거보장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 중 부모나 파트너, 포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가정폭력 희생자로서 인식하고 가정폭력기관과 성폭력기관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 충분히 안정화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학업유지나 직업훈련에 연결시키는 것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을 성급하게 학업이나 직업훈련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청소년에게 또 다른 좌절감과 실패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 또한 성매매에서 탈출을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개입과 전문적 상담을 통해 부채, 폭력, 성폭행과 같은 위기요인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상담자와 클라이언트를 1대 1로 연결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인 YC(Youth Companion)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본 프로그램에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주요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바로 뒤에서 언급하는 다이버전 제도 및 개정 소년법에 의한 6호처분[3]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5) 다이버전의 제도화와 소년법상의 6호처분 활성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다단계 개입을 위한 첫단계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들 수 있다. 즉 성산업 유입 청소년이 스스로 귀가하거나 단속 후 부모에게 인계되는 경우 지역사회 내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일부 비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보호시설 이외에도 청소년 쉼터, 중간시설, 중장기 보호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식적인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4]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요청된다.

---

3) 개정 소년법상의 6호처분이란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소년법에서의 보호처분은 7종류였으나, 2007년 말에 통과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의 종류가 10가지로 늘어났다. 신소년법의 6호처분은 구소년법의 4호처분과 동일하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사법기관에 송치되었을 경우, 검찰의 재량에 의해 40시간의 의무적 교육을 명령할 수 있으나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청소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처리는 단순 귀가조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의 관행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지선, 2001)는 주장이 있다.

즉 이들에게 단순한 귀가조치를 내리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보호에 실패했던 보호자에게 아무런 환경의 개선도 없이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되어, 이들을 다시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게 하거나 다른 비행으로 빠지는 것을 방치할 수도 있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사회화시키고자 하는 보호처분의 이념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의 기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처분방법으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의 폐지와 소년수탁시설 위탁처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은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위탁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 소년법상의 개정 소년법 6호처분을 원래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원에 수용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우려되는 소년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김지선, 2001).

이러한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개정 소년법 6호처분인 소년위탁시설로 전술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실시 중인 교육 위탁처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들 기관의 가장 어려운 점은 피교육 대상자의 모집에 있다. 이는 본 시스템에 대한 법률가들의 인식 부족과 국가 기관들 간의 소통의 부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본다.

---

4) 다이버젼이란 경찰, 검찰, 감별소, 법원 등 소년사건 처리과정에서 사법절차를 우회하여 가능한 조기에 사건을 종료하는 방법이다. 다이버젼을 실시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소년이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낙인효과, 학업이나 직업활동의 장애와 같은 피해를 적게 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할 소년이 줄어 들어 국가개입이 필요한 소년들에 보다 많은 시간과 시설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이버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다이버젼된 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준호·이순래, 1994).

6)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상업적 성착취의 근절 및 성매매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예방, 조기개입, 집중적인 개입, 사회복귀,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물론 소년사법체계, 사회복지기관, 학교,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주민 등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하고 연속적이며 긍정적인 지역사회기관의 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상황이 변할 때 청소년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며 더 쉽게 발전적인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영국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전문가(community Worker/Officer)가 경찰, 지역주민, 성매매 여성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홍봉선, 2007).

그러나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연계수준 정도는 매우 낮고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조직들만 행하는 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초보적 단계이다. 성착취 청소년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력이 체계적, 지속적, 통합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성착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사건을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착취 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대한 지침서 마련,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 체계 확립, 관련 담당자들의 교육과 훈련, 기관 간 협력의 공식화 및 관련 규정의 마련, 통일된 사정 및 분류화 도구사용, 지역별 협의체 구성 및 다학문적 팀의 사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인터넷의 활용

청소년 성매매는 인터넷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첨단 통신매체의 발달을 통해 P2P(Person to Person)방식의 개인적 접촉이 원활해짐에 따라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법적 제도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제의받는 곳은 주로 채팅(위기청소년 57.6%, 일반청소년 56.6%)으로 인터넷의 영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영국에서는 '아동착취와 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상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법집행, 아동보호, 의사소통기술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24시간 잠재적인 학대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조사, 경찰과 함께 위기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5. 결론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이나 행동은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매우 건전하다. 또한 주요범죄의 발생률을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은 상당히 낮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그러한 낮은 범죄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보인다. 하나는 폭력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범죄 가운데서도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이 높은 발생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은경, 1999). 이는 한국 사회에 가부장적 폐습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서 잔존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남녀 및 연령적 차별이 심하고 특히 성과 관련하여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매매 개입 청소년을 성매매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 방향성이 매우 건강하며 강력한 학술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위시하여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강화는 해당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 축적이 많지 않으며 또한 관련 제도의 구축이 제대로 정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원고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당위성을 보다 확산시키며 관련 청소년의 사회적 재적응을 통한 그들의 복지 증진과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 특히 청소년 성매매의 근절에 일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루빨리 우리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통합적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성혜(2000),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성혜(2001), “성매수대상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청소년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김문조·이성식(1994), 유해업소와 청소년 비행, 민족문화연구 제27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김시업(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준호·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혁(2000), 가출여자청소년의 성상품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학교사회사업 제3호,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남미애(2001),“ 청소년의 매매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남미애(2004),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사회적 지원방안, 사회과학논문집 23권 2호,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민무숙·김인숙(1999),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민영선(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상과 대책”, 배행소년의 생활세계,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박동균(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한국경찰학회.

박미숙(2000). 성산업유인청소년의 사회복귀에 관한 법률적 검토, 향락산업에 유입된 10대 청소년성문화의 사회복귀방안-제5차 연속토론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박성동(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대책”,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성윤해(2001), “십대가출청소녀의 섹슈얼리티 재현 과정에 관한 여성학적 연구-다방여종업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인숙(1999), 비행여자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인섭(1987),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홍익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정경숙(2001), “십대소녀의 성적 거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신라대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규석·김영종(2003),“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조미경(2000), 여자 중·고등학생의 성 허용성과 성 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봉선(2002), 청소년 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홍봉선(2007),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영국의 개입방향 및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홍봉선·남미애(2007),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효과성 검증 및 성과분석, 국가청소년위원회.

홍봉선·남미애(2009),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Ayre & Barrett(2000), Young people and prostitution:An end to the beginning?, Children and Society.

Badgley, C.& young, L(1984), Juvenile prostiution and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mmumity Mental Health, 6, 5-26.

Barnardos(1998), Whose Daughter Next? Children Abused Through Prostitution, Esses: Barnardos.

Cusick, L.(2002), Youth Prostitution: A Literature, Child Abuse Review.

Deren et al.(1996), Prostitutes can help prevent the Transmission of HIV. Nursing Times.

Farr, F., Castro, L., Disantostsfano, R., Claassen, E., & Olguin, F.(1996). Use of Spermicide and Impact of Prophylatic Condom Use Among Sex Workers in Santa Fe de Bogota, Columbia.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Finstad, L. & Hoigard, C.(1993). Norway in David, N.(ed) Prostitution: An International Handbook on Trends, Problems, and Policies.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Green J., Mulroy, S. and O'Neil, M.(1997), Young people and prostitution from a youth service perspective in D. Barrett(ed.) Youth Prostitution in Britain: Dilemmas and Practical Responses, London: The Children's Society.

Hester, M & Westmarland, N (2004), Tacking Street Prostitution: Towards an holistic approach.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McMullen, R. J.,(1987), Youth prostitution: a balance of power, Joural of Adolescence.

MÅnsson S. A. & Hedlin, U.C(1998), Breaking the Matthew Effect-on Women leaving prostit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Melrose M., Barrett, D. and Vrodie, I.(1999), One Way Street? Retrospectives on Childhood Prostitution, London: The Children's Society.

O'Connell-Davidson, J.(1998), Prostitution, Power and Freedom, Cambridge: Polity Press.

O'Neill, M.(1997), Prostitute Women Now, in G. Scambler and A. Scambler(eds.) Rethinking Prostitution: Purchasing Sex in the 1990s, London: Routledge.

Rosiello, F.(1993), The Interplay of Masochism and Narcissism in the Treatment of Two Prositutes.

Scambler, G. & Scambler, A.(1995), Social change and health promotion among women sex workers in London.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Schissel, B. & Fedec, K. (1999). The selling of innocence: The gestalt of danger in the lives of youth prostitute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Seng, M. J. (1989), "Chil sexual abuse and adolescent prostitution : A comparative analysis", Adolescence, Vol 24, No. 95.

Vanwesenbeeck, I.(1994), Prostitutes's Well-Being and Risk. VU University Press, Amsterdam.

Vanwesenbeeck, I., de Graaf, R., van Zessen, G., Straver, C.J. & Visser J.H.(1993), Condom use by Prostitutes: Behavior, Factors and Conside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과 성구매자 처벌의 현실

부정주 부천남부경찰서 경사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청소년 대상 성구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 법률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보통 '조건만남'이라고 칭하는데, 최근에는 ㅈㄱ(조건만남 약자), 키알(키스알바), 사까시알바(대가성 유사성행위), 이반알바(남성간 동성의 성매매) 등으로 일컫는 말이 다양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이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따라서 대가를 주지 않았더라도 줄 것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그 행위도 직접적인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성적 착취 행위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하는 성구매자와 성을 팔려고 하는 아동·청소년 사이의 은밀한 만남에서 시작된다.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만남의 수단은 '인터넷, 전화방, 이동통신, 거리에서의 헌팅, 지인의 소개, 성매매 업소, 기타의 만남' 등이 있으며, 그 중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00년 44.8%를 차지하던 인터넷을 통한 만남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여 2007년에는 전체 만남 방법 중 91.3%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오는 2011년에는 77.3%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eMarketer, 2007.02.13)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터넷을 매개로하는 성매매는 2007년 수치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사과정과 경찰의 현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그 특성상 성을 사는 행위자인 성구매자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신고나 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모두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그 당사자나 타인의 신고가 아닌 경찰의 인지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실정이다. 이는 곧 수사기관인 경찰의 의지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통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찰은 각 사건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이 성폭력 등 강력 사건과 병합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형사과나 수사과에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그 수사를 담당한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 수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의 만남 방법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므로 경찰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무수한 채팅사이트가 있으며 대다수의 채팅사이트는 의도적으로 불건전 만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이트의 가입절차는 아동·청소년이나 성구매자 모두에게 형식적일뿐 까다롭지 않다. 최근에는 아이디 가입 없이 무작위로 채팅할 수 있는 이른바 '랜덤 채팅'까지 등장하여 그 접속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사이트를 통한 성착취 피해사례 수집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구매자들은 특정한 사이트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사

용하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러한 사이트를 경찰은 모니터하고 있는데, 수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성구매자의 대화를 모니터하기보다는 성을 팔겠다며 채팅방을 만들거나 채팅방 내에서 그러한 대화를 시도하는 아동·청소년을 가려내어 그들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만나 그간의 성매매 경험을 듣고 그들이 만났던 성구매자의 혐의점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을 팔겠다고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그간 성매매 경험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경험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성구매자에 대한 일부의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찾아내는 일이나,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수사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사의 어려움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전국적으로 244개의 경찰서가 있으나 각 경찰서는 치안여건 등을 이유로 여성·청소년계가 없이 그 업무를 타 기능에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전체의 30%에 이른다. 게다가 여성·청소년계가 있는 경찰서라 할지라도 주된 업무는 소년범죄를 다루고, 아동 및 성인의 성매매 사건은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또한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발령으로 그 전문성마저 부족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다른 범죄의 수사보다 그 과정이 힘겹고, 수사관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인해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경찰의 업무량 과다, 인력 부족, 전문성 결여, 적극성 부족 등은 그나마 진행 중인 성매매 수사과정에서 기타 사회·환경적 요인 등과 결합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기도 한다. 종종 성매매에 나섰던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런 요인에서 기인한다.

그동안 필자가 만나온 수백 명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보호자나 학교로부터 이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보호자가 있다고 하여도 보호능력이 없거나 보호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들 중 10%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은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 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성매매에 나섰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생각에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범죄자로 바라보는 주변의 인식 등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겪은 경험이 성폭력 피해임을 모르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도움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에 비해 피해회복을 도와주거나 법률적 행위를 대신해 줄 지지

자가 부족하다.

3. 아동·청소년 성구매자 처벌의 현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사건은 얼마나 발생하며, 성구매자는 얼마나 될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304명, 2001년 1,407명, 2003년 1,506명, 2004년 1,595명, 2005년 1,275명, 2006년 833명, 2007년 771명으로 모두 남성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발생 및 성구매자에 대한 통계는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크고 그 추정 또한 어렵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한 시간 가량만 접속해도 성을 팔겠다는 청소년 여러 명을 쉬이 만날 수 있고 한 명의 아동·청소년이 여러 명의 성구매자와 만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 통계는 빙산의 일각임을 확신한다. 또한 최근 필자가 만난 성구매자는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도 나타나고 있으며 동성 간 성매매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구매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자. 영국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구매를 한 경우 최고 종신형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최고 14년, 1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제 성적 접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더라도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최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일본은 18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0년인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해 왔고 올해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 법률 제1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추가되긴 하였지만 처벌 수위는 2000년 첫 시행 때와 다르지 않다. 또한 동법 제2항은 아동·청소

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영국의 사례를 본 따 힘겹게 개정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형벌 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성구매자이거나 대상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성구매자인 경우 그 신상 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되며 그 중 특별한 경우는 사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범죄의 일반 예방적 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 처벌 수위나 인지의 어려움 등으로 볼 때 적극적 수사권 행사를 기대하기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공개방법, 공개기간 등을 보완해왔다. 수사경험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들이 대부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의 잘못이 알려지는 것이었다. 일부에서 신상공개제도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상공개는 성구매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이고 재범방지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이 전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8월 30일부터 2007년 11월 21일까지 총 7,916의 아동·청소년 상대 성구매자 중 1,576명(19.9%)의 신상 정보가 당시의 법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공개될 것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성착취 행위를 포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범주에 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라는 별칭을 붙여 좀 더 중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성폭력범죄가 아닌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된다. 2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후 그 중에서도 벌금형 선고 이외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판사가 공개명령 판결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의 대부분은 벌금형 선고를 받고 있으며 징

역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성구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2000년 44.7%에서, 2001년 58.6%로 급증한 이후 2002년 55.9%, 2003년 56.3%, 2004년 43.2%로 소폭 하락하였고, 다시 2005년 58.1%, 2006년 78.3%로 급증하였다. 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감소하였고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2004년까지는 증가하였다가 그 후 감소하였다. 7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대체로 벌금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유를 구속하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9.7%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통계가 1심의 선고형임을 고려한다면 최종심의 경우는 그보다 중하지 아니함을 추정할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최종심의 선고유형은 벌금형 79.6%,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16.9%, 유기징역 3.5%를 선고받았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는 이미 성매매가 아닌 강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구매자의 신상 공개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어려운 퍼즐을 맞추듯 까다로운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공개명령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 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수사 및 처벌 이대로 좋은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그들이 또 다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뿐 아니라 올바른 성인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육기관의 역할분담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수사 및 처벌의 현실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어떻게 풀고 보완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재할 경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거나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는 자발적인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잘못된 생각, 이들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 마땅한 보호자나 지지자가 없는 그들의 환경, 그 밖의 편견 등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법률적 제재 수단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도 청소년 성매수 근절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1) 수사과정에서의 대안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사례나 2차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범죄자가 아닌 당연히 보호 받아야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구매 행위의 근절은 인식전환과 함께 수사기관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문가를 실질적으로 양성하고 적정 수준의 수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을 배제하고 일정기간 그 업무만을 전종(專從)할 수 있는 전담 부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오랜 기간 담당해 왔던 전문상담원이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수사 과정 및 공판 과정 등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지지자 내지 보호자 역할을 하

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상담원의 활용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심리상태, 지적 수준 및 판단 능력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상담원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밖의 사정 등 필요한 수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성구매자의 범죄를 입증하고 수사의 임의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과정 초기부터 상담원이 개입할 경우, 수사대상으로서 불안감을 갖는 아동·청소년에게 안정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이 밑바탕이 되어 추후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 과정 뿐 아니라 공판 과정, 확정판결 이후까지 계속 개입이 된다면 향후 예상되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검사의 수강명령 등의 집행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검사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수강명령을 내리려고 하여도 경찰수사 이후, 수강명령을 내릴 시점까지의 시간경과로 인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사라져 버려 수강명령을 내릴 수 없거나 내린 경우에도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수강명령을 통해 40시간의 위기청소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후관리를 받은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탈성매매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안

앞에서 제시한 수사과정상의 대안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죄의 처벌 수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들의 형사처벌은 외국 사례에 비하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법정형이나 양형을 강화하자는 의미는 단지 이를 통해 범죄의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함만은 아니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가 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한 번쯤은 걸릴 수도 있거나 재수가 없어 걸린 것 쯤'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신상공개 제도의 보완

이 필요하다.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만으로 신상공개제도를 평가한다면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미미하다. 적어도 재범자는 더 이상의 조건 없이 신상등록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범의 성구매자의 경우에는 재범을 막기 위해 반드시 올바른 성가치 형성이나 왜곡된 성인식 변화를 위한 전문적이고도 실질적이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성인 대상 성구매 초범자에게 시행 중인 존스쿨(8시간)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이수하는 위기청소년 교육시간(40시간) 정도의 과정으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일정기간 실질적으로 교육한다면 초범의 성구매자일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혹자들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대부분 스스로 하는 자발적 성매매임을 강조하며 처벌을 주장하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않는 경우이다. 성매매가 주로 일어나는 채팅사이트에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될 수 있는 여성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발적 성매매를 하였다고 불리는 그들이 하듯 "○○역 2번 출구 1시간 15만원....."등의 채팅방을 개설해 보라! 이후 펼쳐지는 상황에 여러분은 분명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수한 남성들이 위와 같은 방을 개설한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먼저 대화하기 위해 쪽지를 보내거나 대화신청을 위해 경쟁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성매매의 고의를 가지고 아동·청소년들이 먼저 채팅방을 만들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대화를 거부하여도 성구매를 마음먹은 남성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매매의 조건을 흥정해 올 것이다. 채팅방을 만든 사람과 대화가 안 되면 마치 큰 낭패를 보는 것처럼 분주히 범죄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구매자들은 아동·청소년에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단지 판단력이 미숙한 당신의 자녀나 동생이 먼저 그러한 채팅방을 만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합리화시키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채팅방을 계속 만들도록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아이가 먼저 저에게 조건만남 하자고 글을 보내왔어요."
"걔가 동의해서 한 것이고 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 건 데 잘못입니까"

"갈 때가 없다고 해서 재워줬고 괜찮다고 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그것도 죄입니까"

"남자니까 형사님도 다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난 그 아이가 20세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만났어요."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잡나요."

"재수가 없어서 걸렸네요. 벌금 좀 내고 말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들이 필자에게 했던 말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겠는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전 세계적 공통점은 업소형 성매매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수자와 아동청소년 개인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성매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말 서울 지역 가출 여중고교생 1779명 중 175명, 즉 10명 중 1명이 성매매로 검거되었다. 검거된 숫자만 그렇다. 인터넷 성매매의 특징은 빈곤이나 가정불화 내지 폭력에 의한 반강제의 가출이라는 점, 성매매의 통로가 인터넷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공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클릭 한번으로 가능하게 된 인간의 상품화가 성매매 영역과 일상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는 점이다. 청소년은 돈 몇 푼에 성인들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 유사성관계, 애인대행, 키스알바 등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려를 낳는 것은 연령이 낮아지고 상습화되어가고 있으며, 일반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 7월~9월 사이 10대 성매매 피해 청소년 43명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 그 중 38명(88%)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53%인 23명이 가출 후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성매매를 했다. 가출은 청소년 성매매로 연결되는 주요 경로이다. 또 첫 인터넷 성매매 연령은 16~17세가 56%로 가장 많고 13~15세도 30%로 나타나 대부분 저 연령인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성매매 횟수는 가히 충격적이다. '10회 미만'(37%)보다 '10~50회 미만'(40%)이 더 많고 '100회 이상' 또는 셀 수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1%에 달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에서 변태행위 강요, 폭행,

성병 감염, 성폭행, 협박 등을 비롯하여 납치, 사기, 갈취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성윤숙·박병식, 2009).

경기 불황으로 인한 빈곤 가정의 가출청소년 증가도 청소년 성매매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가 급속히 유입·확대·재생산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면 누구나 손쉽게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가 낳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성도 매매할 수 있다는 가치관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문제가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해당 청소년의 인생자체를 파괴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산업이다. 또한 성매수자의 성도덕적 해이는 가정 내의 갈등을 증가시키고, 건전한 사회문화정착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미래를 위한 생산적 가치창출에 저해가 된다. 대부분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현상은 성인남성의 로리타신드롬 성향이나 위기청소년의 소비욕구, 그리고 인터넷이 주는 익명성과 편리성이 만난 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한국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정부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과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법을 소개·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지원상황을 점검한 후,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시스템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국내외의 인터넷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1) 한국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로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의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그리고 법무부 인권국 내의 인권구조과, 대검찰청의 지원활동 중 청소년선도보호,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청의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통합지원센터계 산하의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체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관련 업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부부처 및 주요업무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 시행 •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성매매 실태조사 · 연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 · 육성 • 성매매 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의료 ·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및 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다) 예방교육 등 여성폭력관련 성인지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 시행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 운영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 · 연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 열람 및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 · 시행 • 성범죄 가해 ·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 · 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 · 보급에 관한 사항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	•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 · 상담 · 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 가출 · 비취학 · 학업중단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조정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 ·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	여성 · 청소년 보호 2팀	• 가출, 성매매 등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 신 · 변종 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 단속활동 •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유도 및 평가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상황 종합 점검 · 관리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 범죄피해자의 보호 · 지원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 · 지도 · 감독 및 지원 •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 법률구조법인의 지도 · 감독
대검찰청	지방 검찰청 및 지청	• 검찰청 지원활동 • 범죄피해자지원 - 피해자지원실 및 피해자상담전용전화(1301-95) 설치·운영 • 소년선도 보호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 결연사업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통합지원센터계【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사범 단속 · 지도 •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예방 치안대책 마련 • 성매매 신고접수사건 수사지휘 및 사건처리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여성가족부는 교육 및 생활시설지원으로, 법무부는 긴급지원 및 관련 기관 정보제공 위주로, 검찰청은 범죄피해자 지원 위주로, 경찰청은 단속 및 지도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정부 부처 간의 관련 업무들의 중복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경찰청의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역할은 [청소년전화 1388]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업무 중복성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부처 간의 업무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업무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여, 각 부서의 고유한 업무는 차별성과 특성을 부각시키고 중복업무는 통합·축소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영국

(1) 현황

2008년 영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영국 내 성매매 청소년(18세 이하)은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1](BBC 2008. 3. 27). 하지만 이 통계치는 업소형 성매매

1)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west_midlands/7317595.stm

(pimping)이므로 '개인형 성매매'를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2009년 뉴캐슬의 한 법정에서 파트너 소개소(escort agency)를 통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15세 여학생이 두 달 동안 14,000파운드(한화 약 3,000만원)를 벌었다고 진술했다. 적발 이유도 경찰의 조사가 아닌 담당 교사가 우연히 학생의 가방에서 콘돔과 성관계시 사용되는 윤활제를 발견하여 알게 되었다고 한다[2](BBC 2009. 2. 26).

영국의 청소년 성매매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럽의 개방된 성의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는 학대와 성착취의 문제로 여겨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참여하여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성매매 청소년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다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홍봉선·남미애, 2009).

(2) 관련 법률 및 제도, 시스템

영국은 인터넷 내용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자유주의적인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국가답게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역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도 높은 규제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아동포르노에 대한 규제가 그것이다.

영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은 소위 자율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나 등급제를 관장하는 단체의 권한도 결정적이지 않다. 영국이 고안한 이와 같은 자율규제 체계는 현재 유럽연합의 표준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규제 대상은 주로 아동포르노물이나 청소년 유해정보이며, 방식은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아동포르노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력한 형사법적인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소지나 배포 등의 행위도 처벌한다. 해당 불법내용은 삭제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사업자, 정보제공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2)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tyne/7912485.stm

영국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 특히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법을 신설하여 아동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 유린, 학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11월 20일 제정된 '성범죄법 2003(Sexual Offense Act 2003)'에 의하여 만 18세 이상인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grooming)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5월부터 발효된 이 법은 1978년 아동보호법의 일부 수정법률로 제안되어 제정되었다. 1978년 아동보호법상의 아동 연령기준이 16~17세였던 것을 이 법률 제45조에서는 18세로 상향시켰고 아동보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예외 규정이 이 법률의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예외규정에 따르면 아동보호법 제1조 제1항의 위반 사항(단순 소지, 배포, 전시행위 금지 등)은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사건의 예방이나 수사목적 등으로 이와 같은 대상물을 소지, 배포, 제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에서 상향시킨 아동의 연령규정은 일반 형사법에도 적용된다(Section 1A(1)). 또한 사진에 촬영된 아동이 촬영시에 16세 이상이거나 촬영에 완전히 이해된 동의를 표현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Section 1A(4)). 한편 예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촬영된 아동의 음란한 사진이 동의한 아동 이외의 다른 아동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촬영된 자와 사진소유자가 혼인이나 동거 등의 가족 또는 준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된다. 이 법률은 또한 브라운 판결에서 확립된 '제작행위'(making)에 컴퓨터에 음란표현물을 저장 또는 프린트 등의 행위로 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사항은 대검찰청(CPS)과 경찰청장연합회(ACPO)는 이 법률 제46조에 규정된 내용이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중요한 규정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차후 사건처리에 핵심적인 규정으로 간주할 것에 대해 상호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다(이춘화·성윤숙·조아미, 2008).

(3)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EOP)

영국의 인터넷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로는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가 있다[3]. 정부에서는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인터넷의 성적 유인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아동들의 문제를 어디에서든지 책임진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 센터는 아동의 성적 학대를 근절시키고 영국 국내 및 국제경찰의 협조를 얻어 전과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를 단속하며, 아동보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 어린이자선단체, 기업체, 정부, 기타 어린이 성폭력문제 관련 단체들의 전문성을 접목시키고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는 2008년 정보부(29명), 운영부(24명), 위험관리부(24명), 개발지원부(20명), 정보통신기술부(7명), 통신부(5명) 등 총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곳의 2008~200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국고지원 75%, 프로젝트 수입 6%, 내부사업 수입 19%로 가장 많은 부분이 국고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3) 일본[4]

(1) 현황

일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원조교제가 등장한 것은 1982년에 만들어진 '애인 뱅크'[5]가 직접적인 계기이다. 그 후 원조교제는 '텔레폰클럽'(telephone club)[6]에서 사용되다가 일반 매스컴이 크게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었다.[7]

그러나 일본에서의 원조교제는 우리의 청소년 성매매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원조교제라는 명목으로 성을 매매하고 있는 당사자가 반드시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10대부터 50대 여성에 달하며, 18세부터 22세의 여성이 40%를 점하고 있고 직업도 여고생, 회사원, 대학생, 프리터(free arbeiter), 기혼여성까지 다양하다. 또한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매매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매매 외에 커피숍에서 대화 파트너가 되거나 노래방에 함께 가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게 하는 것 등 다양한 행

---

3) http://www.ceop.gov.uk

4) 성윤숙·박병식(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남성과 여성의 교제를 중개하는 조직으로서 1982년에 '황혼족(夕ぐれ族)' 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는데, 1984년 매춘방지법에 의해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6)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트 클럽은 1990년대 전반에 등장하였다. 주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클럽이다. 업자가 이들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남성 고객은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실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타입의 여성이 있으면 데이트 요금을 지불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데이트의 내용은 교섭에 따라 다르다.

7) 원조교제라는 말이 전국 일간지에 등장한 것은 1994년 9월 20일자 마이니찌신문(毎日新聞)이 최초이다.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매스컴은 '여고생의 매춘' 과 같은 의미로 원조교제를 대대적으로 다룸으로써 원조교제 붐을 일으켰으며 매스컴 보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園田浩二,「援交少女とロリコン男」, 洋泉社, 2006, 30쪽.

태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원조교제라 하면 남성이 사고 여성이 파는 형태이지만, 여성이 남성을 사는 '역원조교제(逆援助交際)'나 동성 간의 원조교제도 있다.[8]

원조교제는 당초 텔레폰클럽과 전언(傳言) 다이얼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미디어를 '전화풍속(電話風俗)'이라고 부른다[9]. 이 전화풍속의 이용형태는 텔레폰클럽에서 점차 전언다이얼, 다이얼 Q2(투샷), 다이얼 Q2(Q전언), 투샷 전송시스템으로 변천되어 왔다.

그러나 전화풍속의 수는 근래 급격하게 줄고 있다. 2002년 4월 1일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풍속적정화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전화풍속을 '전화 이성소개 영업'으로 취급하여 규제하게 되었고 각 도도부현에서도 '텔레폰클럽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했기 때문이다.[10] 특히 연령확인 의무는 텔레폰클럽에 출입하는 남성에게 신분증명서 제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전화를 거는 여성에게도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11] 오늘날 텔레폰클럽은 거의 직업화된 성인여성과 남성이 신속하게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원조교제 목적의 이용자는 이른바 '만남 사이트'로 옮겨 가고 있다.

일본 경찰청의 '인터넷 상의 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 대책 연구보고서'는 '만남 사이트'를 '일반적으로 면식이 없는 자끼리 만날 것을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설치된 사이트'라고 정의하고 있다.[12] 즉, 서로 모르는 남녀가 익명으로 만나 대화와 교제를 즐길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만남 사이트'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자의 요구에 응하여

8) 1999년 1월 11일자 'AERA', 朝日新聞社, 58호, 60쪽; 伏見憲明, '性の倫理学', 朝日新聞社, 2000, 64쪽.

9) 전화풍속이라는 말은 사회학자 미야다이(宮台真司)가 만든 조어로, "불특정 남녀의 만남을 중개하는, 전화회선을 사용한 서비스를 지칭한다". 宮台真司'テレクラの民族誌'上野千鶴子'色と欲'小学館, 1996, 123-166쪽.

10) 규제의 주된 내용에는 ① 관할 경찰서에의 신고 의무, ② 관공서나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로부터 주위 200미터에서의 영업금지, ③ 영업금지 구역에서의 광고·선전의 금지, ④ 연령확인 조치 의무, ⑤ 오전 0시부터 일출까지의 영업금지 등이 있다.

11) 園田浩二, '沖縄テレクラ社会史 : テレクラ規制がもたらしたもの', 沖縄大学地域研究所所報, 제30호, 2003, 122-132쪽.

12) 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会,「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報告書」, 2003, 4쪽.

그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이를 전달하고, 이 전달을 받은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PC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웹사이트에서 대화나 교제를 목적으로 이성과 메일 등 연락을 하는 행위이다. 전화풍속이 원조교제의 매체로 규제를 받아 쇠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익명의 이성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남 사이트가 등장한 것이다. 만남은 처음에는 무료로 PC를 통해 접속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오늘날 만남 사이트에는 PC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 두 방법 공히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있다. 언제 어디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몇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만남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만남사이트를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도 증가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제도

2003년 6월 13일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83호)이 공포되고 동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본법의 제정 후 일단 감소하던 만남사이트 관련사건의 청소년 수는 2006년 1,153명으로 재차 증가하였다. 또한 본법 시행 전인 2002년 이후 일관되게 피해 청소년 수는 1,000명을 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자 이외의 사이트 이용에서 기인한 청소년 범죄피해도 상당 정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10월 경찰청에 유식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만남사이트 등에 관계되는 아동의 범죄피해방지연구회가 설치되어, 만남사이트 등에 관한 청소년의 범죄피해방지책에 대해 검토를 행하였다. 2008년 1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대한 신고제의 채택,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가 아동과 관계되는 입력을 알게 된 때의 삭제, 아동피해의 방지활동을 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8가지의 제언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13]가 만들어졌다. 이를 받아 경찰청에서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청소년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 활동 촉진에 관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

13)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の係り方について」(2008. 1. 10),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研究会(http://www.npa.go.jp/cyber/deaimeeting/index.html).

개정안이 작성되어, 2008년 2월 29일 각의결정을 거쳐 제169회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심의에서는 개정사항 뿐 아니라 성인인증방법, 사이버 범죄의 단속, 인터넷 상의 위법정보·유해정보대책, 필터링, 정보윤리교육, 만남사이트 외의 사이트에서의 청소년 피해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법률안은 중의원과 참의원 공히 전회 일치로 원안 그대로 가결되어, 2008년 6월 6일 개정법으로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남사이트 규제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한 권유를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유하는 글을 입력한 청소년도 처벌의 대상으로 한 점이다. 부정 권유 내용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글은 물론이고 성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금전수수를 수반한 데이트 권유 등도 단속 대상이다. 둘째, 휴대전화를 통한 만남 사이트의 이용이 많은 현실에서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만남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벌칙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한 만남사이트의 운영자로 하여금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도록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지운 점이다. 넷째, 부정 권유의 금지효과가 제고되도록 벌칙을 정하였다. 청소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부정 권유 행위를 하고 있는 이상 이것을 단지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불충분하다. 이에 18세 미만 청소년의 가입도 처벌대상으로 하였다.[14]

그러나 만남사이트 규제법은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만남사이트의 특징은 이용자 수가 다수라는 점과 익명성에 있다. 어떤 만남사이트는 등록자가 무려 약 180만 명에 달하며 하루에 약 20만 명이 접속하고 있다고 한다. 입력한 내용 중에는 성매매 권유도 적지 않다. 만남사이트 측은 성매매 권유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이 두려워 성매매와 관련한 입력을 삭제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접속 때문에 모두를 삭제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 때문에 만남 사이트 규제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남사이트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만남사이트 규제법을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 즉, 처음에는 만남사이트를 통해 메일친구로 사귀다가 나중에 만남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메일을 주고받아 원조교제와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 만남사이트 규제법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14) 다만, 소년법의 절차에 따라 보호처분이 될 가능성이 크며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는 없다.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4) 미국

(1) 현황

2009년 3월 19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Detroit)에 있는 연방지법의 로렌스 재트코프(Lawrence P. Zatkoff)판사는 인터넷에서 일명 “Motor City Mink"로 알려진 로버트 다니엘(Robert C. Daniels, 29세)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생산, 판매, 유통 및 아동 성매매 범죄행위에 대하여 3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다니엘은 9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적어도 89명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모집해서 포르노그래피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결은 2006년 미국 의회가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안전법 또는 아담 왈시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이 판결은 또한 미국 법무부가 2006년부터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 “안전한 어린시절 프로젝트(Project Safe Childhood)”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검찰, FBI 등 정부기관들과 미아 및 어린이 착취방지센터와 같은 아동권리보호기구, 그리고 주 및 지방검사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터넷을 통한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이다.

2008년 9월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안전한 어린시절 프로젝트(Project Safe childhood)” 추진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아동 성범죄건수는 2,218명의 피고를 대상으로 2,118건이나 된다. 이는 2006년 1,760명의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1,657건이 기소된 것에 비해 무려 27.8%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에 따라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미국 전역에 걸쳐 59개 지역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인터넷 범죄예방 프로그램(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ICAC)”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2,350명 이상의 아동 성범죄자들이 체포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 청소년 정의 및 일탈방지 사무국(Dept. of Justice'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지속적으로 “안전한 어린시절 프로젝트”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를테면,

2008년에만 하더라도 1,7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인터넷을 통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00년에 발간된 미국 청소년에 관한 인터넷 피해 보고서에 의하면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중에 대략 5명당 1명은 '인터넷 상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런 통계치는 인터넷 상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성적 유혹을 통해 오프라인 상에서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에서도 점차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채팅이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유인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형태가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2) 관련 법률 및 제도

미국에서는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채팅 또는 이메일로 접근하는 행위를 인터넷루어링(Internet Luring)으로 처벌하고 있다. 인터넷루어링은 그루밍(Grooming) 행위 중 하나로써 아동에게 성매매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인터넷상으로 그루밍(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병식·김경제·임규철·이혜리, 2007:40). 물론 인터넷루어링은 굳이 친분관계를 포함하지 않아도 호기심 많은 미성년자에게 단순한 성행위 주제의 이야기나 포르노를 보여주겠다는 유인 등을 한 경우 범죄 요건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다.

1998년 아동보호와 성관련 범죄자 처벌법(Child Protection and Sexual Predator Punishment Act of 1998)은 성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성범죄로 정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 주의 경우에는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컴퓨터 사용"과 같이 온라인으로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령을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 연방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가 실행되기 전 단계에서 범죄인을 체포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1998년 아동보호와 성관련 범죄자 처벌법은 컴퓨터로 인해 조장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위협, 특히 끔찍한 성폭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신종범죄 수사를 위한 지원과 방법을 제시하여 미국의 아동이 성범죄자의 성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있다.

아담 왈시 어린이 보호 및 안전 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16]은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의회가 2006년 7월에 입안하고 2009년 7월에 발효될

15) 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s Website www.ncmec.org

예정이었다. 이 연방법안에 대한 수정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아동 학대, 유괴, 음란, 아동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등의 유통을 위한 인터넷 이용을 포함하여 아동 성착취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아동의 성착취를 위해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작, 유통행위를 하거나 아동 성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하여 등록하고 성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들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연방에 보고하여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성 피해 아동에게 15만달러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6월 20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관련법(The Cybercrimes Against Children Act of 2007(SB 1004))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범죄에 대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17]

미국의 주법 중에는 연방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그루밍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조지아주법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아동을(심지어는 성인을 포함)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또는 지역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기타 알라바마주, 아리조나주 등 30여 개 주에서 인터넷루어링을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다.[18]

(3) 지원기관: 실종 및 착취아동신고센터(NCMEC)

아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가운데 하나인 '실종 및 착취 아동신고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는 1984년에 미국 버지니아의 알렉산드리아의 외곽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기구이다. NCMEC의 임무는 아동 유괴와 성적 착취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

---

16) http://www.ncsl.org/IssuesResearch/CivilandCriminalJustice/HR4472AdamWalshChildProtectionandSafetyAc/tabid/12699/Default.aspx

17) 예를 들어 2007년 6월 기준으로 그루밍, 특히 인터넷루어링(인터넷상 피의자가 범죄아동피해자의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점에서 미국의 유일한 주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피해자에게 그루밍 행위(믿음을 형성함)를 하고 그 해당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따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다. 박병식·김경제·임규철·이혜리(2007) pp. 43~44 참조.

18) 상세한 주의 명칭과 법률 근거는 박병식·김경제·임규철·이혜리(2007) pp. 44~46.

한 전문가들이 실종 아동 찾기, 유괴 아동 피해자와 성적 착취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는다. NCMEC는 154,161명의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법무성을 도와 그 중 138,506명의 아동을 가족으로 돌려보내는데 기여했다. 또한 지금까지 670,500개의 아동 성착취 보고서를 처리하면서 256,386명의 법무성 직원과 관련 전문가들을 훈련시켰다. NCMEC는 미국 내 유일무이한 기관이다. FBI의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국가법집행통신시스템(NLETS), 연방아동지원서비스(FPLS)[19]에서 제공하는 실종 명단, 수배 명단과 미확인 명단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아동보호 비영리 기구이다.

또한, FBI는 FBI의 사이버 범죄방지 프로그램의 하나인 '범국가적 무죄이미지 운동(Innocent Images National Initiative, IINI)'은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동포르노와 아동 성착취를 막기 위해 정보수집, 사전예방활동, 다기관협력 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IINI에서는 주, 지역, 국제 정부 기관과 FBI 현장사무소 그리고 법수행관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협력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에 걸쳐 수집한 사례에 대한 정보 분석과 집중화된 협력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IINI의 임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착취와 학대 행위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혹은 여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혹은 사업적으로 아동 성착취를 하는 성범죄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훈련 프로그램과 연구지원을 통해 연방, 주, 지역, 국제 등 사법 기관의 역량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IINI는 최근 그 활동영역을 넓혀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올리는 인터넷 웹사이트, 인터넷 뉴스그룹, 인터넷 채팅, 파일서버, 온라인 그룹, P2P 파일공유프로그램, 게시판 및 기타 온라인 포럼 등 인터넷과 온라인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

1)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 정책영역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보호정책이나 제도는 본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19) http://www.acf.hhs.gov/programs/cse/newhire/

에서 실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지원과 실현 의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보호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보호라는 목적을 가능하게 할 구체적 세부 영역, 즉 예방과 처벌 그리고 돌봄의 영역에서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책개진과 전담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전과 목표, 정책영역 설정 후에 단기,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 비전은 "청소년이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교육 및 치료·선도함으로써 재유입 방지', '성매수 피해 여성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의 전문성', '생계형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시설 마련', '처벌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수자의 재발방지', '인터넷 성매매 감시체계 확립',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놀이문화 형성'이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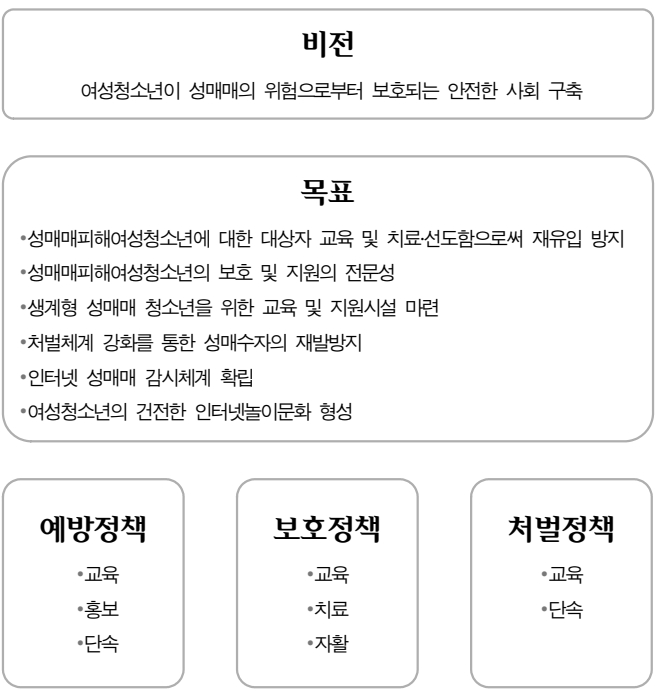

〈그림 1〉 성매매 피해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영역을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를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여성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정책영역에 따른 세부 정책 추진과제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정책 추진과제
예방 정책	교육	•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시스템 체계화 • 청소년대상 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청소년 성주체성 중심의 학교 교육 강화 •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가 양성 • 초등학교 전 학년 성교육의 정규 과목화
	홍보	• 인터넷 성매매 예방·계도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 대국민 성매매 예방 캠페인 실시 •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단속	•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책임강화 • 가출·폭력 피해자의 긴급구호 시스템 마련 • 인터넷 실명제 확대실시 •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성인 신분확인의무제 강화 •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차단
보호 (돌봄) 정책	교육	•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기교육센터 확대 설치 •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을 위한 개입 매뉴얼 개발
	치료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재활 교육의 실시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성병 및 정신적 치료의 무상지원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치료기관 연계 • 3회 이상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여 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실시와 반강제적인 교육과 자활 실시
	자활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쉼터지원 확대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재유입방지 '청소년성장캠프' 확대 • 학교·청소년지원센터·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근로지원 시스템 제도화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단기보호소 확대설치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단기형 대안학교 구축 •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설립 • '두드림 프로젝트' 등의 직업탐색 프로그램 확대지원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정책 추진과제
처벌 정책	교육	• 군인, 직장인, 대학생 대상 여성청소년 성구매자 예방교육 • 존스쿨 교육 40시간으로 확대 실시
	단속	• 인터넷 성매매 사이버수사대 전담반 설치 • 인터넷 성매매 관련 사이트 처벌강화 • 경찰의 단속의지와 전문인력 충원 • 청소년대상 성매매 가중처벌제도 도입 • 인터넷수사대, 성매매 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사회가 팀으로 구성되어 인터넷 성매매를 감시하고 단속·처벌하는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 여성청소년 신고 시 보호제도 구축 • 성매매 유인행위 처벌제도 정착 • 게임, 채팅사이트에 '간편 신고창' 구축 • 성매매 유인행위 발견 시 단속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장의 예외 인정 • 책임부서의 명시 및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 • 각 경찰청에 인터넷 성매매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적발 • ISP(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 및 유기적 협조 신상공개제도 활용 • 인터넷상의 성매매 합의를 강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단속기관에 강제열람권 부여 • 게임, 채팅사이트에 적발과 처벌광고의 게재 • 신고 시 포상제도 및 파파라치제도 도입 • 지역 권역별 단속전담팀 구성

2) 구체적인 정책 제언

(1) 인터넷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청소년 성매매 예방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전담조직 또는 협력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하며 성매매 청소년에 관한 전담업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청소년 성보호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아동 대상 성범죄의 단속과 처벌은 수사기관과 사법부, 성범죄자 등록 및 관리,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과 자활은 여성가족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 부처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재범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법률, 정책, 예산 등이 따로 수립되어 있어 개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의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영국의 총리실 산하에 아동 성범죄를 전담하는 CEOP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전담기구의 조직 및 전담업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단속 및 효과적인 처벌
성범죄자들에 대한 추적과 재산의 몰수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성범죄자 유전자, 신원정보 등 관리, 인터넷상 열람 업무
▷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피해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
▷ 교육 및 제도개선 업무
재범방지 및 일반인 대상 교육, 인터넷 환경의 개선 등 제도개선

그리고 미국 법무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의 성 착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소위 "안전한 어린시절 프로젝트(Project Safe Childhood)"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연방검찰, 아동대상 인터넷 성범죄 전담반(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ICAC) Task Forces), 연방수사국(FBI), 미국 우편검사국, 이민국, 연방보안관과 같은 정부기관들과, 국립 미아 및 어린이 착취방지센터와 같은 아동권리보호기구, 그리고 주 및 지방검사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 채팅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인터넷 성매매 단속인원을 보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성매수남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라는 영장을 사후영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 차원에서 청소년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책임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인터넷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현재 인터넷 성매매를 단속·수사하는 곳으로는 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있고, 여성청소년계에서도 청소년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여성청소년계나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성매매를 단속하는 인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방법도 인터넷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성매수 남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청소년을 만나 구호하고, 그 청소년이 성매매 경험이 있는지와 상대남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상대남의 휴대전화번호를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영장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환조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속방법도 매우 제한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구호 및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성매수남을 단속하는데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단속인원을 보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성매수남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라는 영장을 사후영장으로 바꾼다면,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성매매를 단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관은 외국사례로, 영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CEOP)를 들 수 있다. 영국의 CEOP와 같은 기관을 우리나라에도 신속하게 도입하여 인터넷 성매매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3) 성매매 피해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안에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전담 원스톱 돌봄 시스템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지원체계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발견부터 정착까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전문리더(동반자)를 제공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적시에 지속적으로 돕고 지원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찾아가는 서비스로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

비스를 청소년의 생활공간에 찾아가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에게 모든 과에서 무조건적으로 의료치료를 지원해야한다. 성매매의 피해는 단순히 성병, 임신, 낙태 등 산부인과적인 질환 또는 내과적인 질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정서적 불안으로 친구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문신을 몸에 그려 넣기도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가족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기에 심리치료, 정신과치료, 피부과지원 등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영적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지원으로 검정고시 또는 대안학교 입학과 학업지원이 필요하다. 부모님과 단절 또는 생활형편의 어려움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원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자활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넷째, 학업을 지속하기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원지원이 필요하다. 취업지원으로 전문자격을 취득하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성매매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가해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피해를 입었지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섯째, 가출청소년으로 성에 노출이 되었으나, 아직 성매매 피해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예방교육 및 각종 지원을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똑같이 지원하여 성매매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 및 남자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 중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들과 남자청소년들이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체 성매매 유입 청소년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미래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 더욱이 정신건강 취약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또한 남자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나 보호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4) 만남 사이트 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

인터넷의 이성교제 사이트(만남사이트)는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미비하다.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의 하에 사이트 개설시 신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명확히 하여 범법자 등에 의한 사이트 운영 제한 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 유인·조장 관련 게시물(및 대화내용) 발견 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침해행위신고, 학원불법영업신고 등 각종 파파라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귀찮아서 또는 간섭이라고 생각하여 못 본 체 하는 인터넷 성매매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시에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인터넷 성매매 신고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신고센터를 통한 전화신고, 또는 신고사항입력 및 이메일, 쪽지 등을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골적인 인터넷 성매매 교섭행위의 근절과 신고의 우려에 대한 불안감 증대 등을 통해 자율적 규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성매매 가담자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인터넷 성매매 관련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고 처벌을 감경하여 인터넷 성매매를 자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로 규정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이트 폐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 강화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사이버 수사대, 학부모 정보감시단 같은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발히 하고, 인터넷 성매매 근절 홍보 활동 및 네티즌들의 ON/OFF-LINE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유관기관들이 민간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축적된 피해사례, 예방법 등을 통해 침해 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제도 등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해당부처 산하 기관간의 원활한 연계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관계기관의 연계가 소극적이다. 앞으로 기관과의 연계 부분에 있어 상위부서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상호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각 부처 산하에 있는 기관의 실무자(경찰, 검찰, 법원, 사회복지 기관인 1388, 쉼터 등)에 대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관련한 교육과 연계를 의무화, 활성화함으로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지원체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청소년 종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안에는 청소년쉼터나 의료기관,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웍이 실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이다. 물론 일부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초기 시스템 구축의 목적 달성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어 기존 지원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성윤숙, 2010).

(6) 인터넷 성매매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인터넷 성매매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첫째, 인터넷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계도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CEOP 센터는 범죄자를 추적하여 기소하는 일 이외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일은 “Think You Know” 프로그램(www.thinkuknow.co.uk)을 기치로 작년에 시작되었으며,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안전에 대한 교육과 최신 보안조치에 대한 조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요약하자면 CEOP 센터는 정보반/폐해최소화반/작전반을 총동원하여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즉 성범죄자 선정, 피해자 파악 및 구조, 사이버 보고를 통해 새로운 정보 생성, 교육과 국민계도운동을 통한 향후 성범죄 예방사업이다. 둘째, 학교의 실제적인 성교육 강화이다.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체적 성장에 맞는 성교육 부재와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성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성매매는 성폭력 범죄이며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성병 등을 통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교육과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피임방법, 성병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인터넷 성매매 시 사전예방을 못해서 건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숙지하도록 성주체성 중심의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일본처럼 초등학교 전학년 성교육 정규과목화가 필요하며 성교육 내용 중 인터넷 성매매의 위험을 알리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유입 예방교육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매매 재유입 예방교육 대상자는 검찰에서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 재유입 예방교육 대상을 검찰에서 수강명령

을 받은 기준으로만 정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이며, 청소년이 원한다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7) 인터넷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실무자 역량강화

현실적으로 전문기관 설립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구축된 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여, 기존 기관에 투입이 되게 하거나, 기존 기관의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관련학과 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성교육 과목에 인터넷 성매매 예방과 대책에 대해 비중을 두어 다루거나, 연수과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청소년 지원관련 기관 실무자 역할 강화를 위해 성폭력의 분야를 살펴볼 때, 상담원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실이 인지되었을 때,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성매매 역시 상담원이 신고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도에 실시 될 청소년의 유인행위 처벌제도에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면,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년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생계형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과연 얼마만큼 신고를 할 지 의문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신고를 할 경우 본인들도 조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혀 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매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사이버 상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다가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을 마련해야 한다.

(8) 주거를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협약 및 기술연계프로그램 지원

가출을 했거나 집에 거주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생계를 마련하게 위해 인터넷 성매매를 한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이나 재학 중이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식 및 주거를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협약 및 기술연계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의 길거리 청소년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보호를 받고 있는 16~18세의

청소년에게 임시 주거지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지고 이곳에서 임시보호, 사례관리, 재입학지원, 치료서비스(정신건강, 약물남용 등), 감독형 지원(취업대비)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재학 중이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식 및 주거를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협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능력을 갖고 최소한의 감시로도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청소년에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약물, 성착취, 혼돈의 상황에서 살아온 청소년에게는 성공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기술연계 프로그램(Skills Link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능력 개발과 성공적인 구직 및 유지를 위한 직업체험을 돕기 위해 개별화된 접근법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15세에서 30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 중 블레이드러너(Blade Runner)프로그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전역의 7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대상은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정부보호를 거치거나 아니면 지원이 되는 취업과정에서 건설업 관련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어려운 15세에서 30세까지의 청소년이다. 첫 과정은 다양한 직업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시간 당 최소임금을 받는 과정을 수반하며, 각 프로그램 이수에 맞춰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료 증명서를 제공한다.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훈련, 정서적 지원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기관과 제휴하여 건설노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크(Peak) 프로그램은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남녀에게 비슷한 수준의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영구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직원은 모두 종전에 성적으로 착취를 당했고 그 자신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참여자와의 신뢰구축과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침과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운영직원과 피훈련자와의 연대 형성을 하고 있으며 6개월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에는 500달러의 성과급이 지급되며, 첫 석달은 성매매로 인한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상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후 석달은 청소년의 흥미와 기술에 맞춰 개별화된 보조금 지급형 취업알선과 정기적인 멘토링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비록 현재는 재정지원이 끊겨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의 탈성매매에 매우 효과가 있었다(Elizabeth Saewyc, 2009).

4. 나오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보호정책은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지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정책 및 행정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녀야 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모든 방안들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터넷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모든 영역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범죄의 예방, 성범죄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그리고 범죄 억제력이 있는 처벌을 총괄하는 통합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유사한 기구로는 영국의 아동성범죄 전담기구인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CEOP)가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단속과 처벌은 수사기관과 사법부, 성범죄자 등록 및 관리,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자활은 여성가족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분산된 업무로 인하여 업무의 유기적 연결과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재범방지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도 아동대상 인터넷 성범죄 전담반(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ICAC) Task Forces)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추가로 2006년부터 미국 법무부에서 인터넷을 통한 아동의 성착취 확산방지프로그램인 소위 "안전한 어린시절 프로젝트(Project Safe Childhood)"를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구는 본질에 있어 CEOP와 ICAC의 모델을 따르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한층 발전된 형태의 보완, 완성된 기구이다. 즉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발견부터 최종 정착과 돌봄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는 말이 허구적 상상의 기호로 남지 않고 유의미한 실제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논의는 "과연 가능할까?"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기성세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결국 논의의 시작은 "어떻게 그 시스템을 구성, 운영할 것인가?"이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박병식·김경제·임규철·이혜리(2007), 온라인상 청소년성보호 관련 법적규제 도입을 위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성윤숙(2010),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의 현실과 대안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주년 토론회.

성윤숙·박병식(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춘화·성윤숙·조아미(2008),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홍봉선·남미애(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園田浩二, '沖縄テレクラ社会史 : テレクラ規制がもたらしたもの', 沖縄大学地域研究所所報, 제30호, 2003, 122-132쪽.

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会,「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報告書」, 2003, 4쪽.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の係り方について」(2008. 1. 10),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研究会(http://www.npa.go.jp/cyber/deaimeeting/index.html).

Danica Szarvas-Kidd(2006), Electronic Luring Statue Under Fire, American Prosecutors Research Institute, Volume 3, Nov.1 at Part I of II.

Elizabeth Saewyc(2009), The Context and Challenges of Employment among Street-Involved Youth in Western Canada.

Wolak, J., Mitchell, K. J. and Finkelhor, D.(2006), Online victimization of youth: Five years later. Alexandria, Virginia.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vii.

http://www.ceop.gov.uk

http://www.ncsl.org/IssuesResearch/CivilandCriminalJustice/

http://www.ncmec.org(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s Website)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west_midlands/7317595.stm(BBC. 2008.3.27)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tyne/7912485.stm(BBC. 2009.2.26).

http://www.ncsl.org/IssuesResearch/CivilandCriminalJustice/HR4472AdamWalshChildProtectionandSafetyAc/tabid/12699/Default.aspx.

http://www.acf.hhs.gov/programs/cse/newhire/

새로운 위기청소년 지원의 현장, 그 가능성을 보다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란영 서울시늘푸른자립학교

1. 들어가며

성매매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1]은 성매매 이전부터 빈곤, 가정해체, 가정폭력 등 열악한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가출, 성폭력, 학교중단 등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로부터 양육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려진 청소년은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 구타, 착취 등 다양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이다. 또한 이 과정에 신체적 건강 상실, 성매수자로부터 받는 모멸감, 진로준비 기회 상실,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등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는 다시 성매매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성매매가 상습화되거나 다른 비행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계는 소위 '쉼터' 중심의 체계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1) 성매매 유입 경험이 있는 모든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이라 칭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아울러 성매매에 유입되는 순간부터 그 이유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피해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등을 제공받고 있다. 청소년쉼터 외에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1388 전화를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등이 있으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성매매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상담소는 청소년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쉼터와 상담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쉼터를 이용해야 한다.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립과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입소기간을 생각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와 검정고시 등과 같은 학력취득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2] 대체적으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퇴자가 많고, 비록 본인들 스스로 학교를 거부하고 제도권 교육에서 일탈하였으나, 사회통합을 위해 학력취득이 필요함에 대해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의 경우 다시 제도권 교육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지만 다수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제도권 교육 내에서 '복학생'은 매우 불편한 존재로써 학교 교사나 또래 집단에서 거부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학력취득과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교육'에도 욕구가 크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학력취득 혹은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만큼 가정환경은 호의적이지 않으며, 양육자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그 대안적인 수단으로 사회적 지원체계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로써 범숙학교와 늘푸른자립학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원체계로써의 범숙학교와 늘푸른자립학교

1) 범숙학교

대안교육기관 범숙학교는 경남범숙의집 부설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시설형 대안학교로써, 2001년 11월 개교하여 2004년에는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중학교과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위탁교육기관 지정 이후 2010년 현재 총 62명의

2) 서울지역의 보호시설에 있는 가출여자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 손다래. 2004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한 학급당 15명 이내로 총 3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범숙학교의 교육목표는 자유인으로서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교육,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육, 정서를 순화하는 교육이다. 범숙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중학교 과정이 학력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별도의 검정고시 응시 없이 학교 출석만으로 중학교 과정 학력이 취득된다. 그에 따라 교과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준하고 있으며,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수업시수를 연간 1,600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 범숙학교의 경우, 학력인정을 위한 교과과정 외에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대안교육 심성치료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위기청소녀의 심성교육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아름다운 도전'은 고난과정을 극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삶의 체험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아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외 또 하나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체험을 담은 청소년 뮤지컬을 직접 기획·제작해 서울과 대구 등 전국 투어에 나서는 것은 물론 심리치유 프로그램인 모래놀이 치료, 미술·연극·음악 치료, 사이코 드라마 등으로 자신의 상처에 대한 분노, 외상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치유한다. 아름다운 도전과 연극프로그램의 경우 다년간 반복하여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 내에서 매우 긍정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면서 학교 재학생들의 자부심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2) 늘푸른자립학교

늘푸른자립학교는 청소년지원시설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9월에 설립되어 아직 1년이 안 되었다. 교육목표는 기초학습을 통해 자립을 위한 학력증진을 꾀하고, 특별활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알며, 자치활동을 통해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경영하고, 직업교육과 활동을 통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현재 한 학기당 25명을 정원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교과 과정은 검정고시 준비과정(중·고등학교 분반운영), 진로 및 직업준비, 참여교실, 성교육 및 인성교육, 야외활동, 자치활동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늘푸른자립학교는 진정한 자립은 정서적 자립과 경제적 자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한 과정으로 학생 스스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검정고시 교과과정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격증 특강 수업 진행 시 자치회의를 통해 자격증 취득 과목에 대해 결정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사 및 교육일정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또한 굳이 쉼터에 입소하지 않고도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직업을 준비 할 수 있다는 점이 쉼터입소를 거부하는 청소년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늘푸른자립학교의 경우 설립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성과를 논하기엔 다소 시급한 면이 있기는 하나, 2010년 4월 검정고시 응시생 10명 중 7명이 합격하였고, 2명이 과목합격 하였다. 이 외에 이 학교 재학청소년에게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특화프로그램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이 있다. 인턴쉽 프로그램은 학교 재학 청소년이 자신들의 진로를 설계하고, 그 진로에 맞는 직업현장에 찾아가서 직업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자신들이 설계한 진로 브리핑 → 면접준비 → 면접 →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인턴쉽 프로그램은 참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 하는 경험과 아울러 본인의 희망과 적성이 일치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하는 기회로 작용하여, 참여 청소년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다.

다음의 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로써 범숙학교와 늘푸른자립학교, 청소년지원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여 본 것이다.

기관 / 분류내용	늘푸른자립학교	범숙학교	청소년지원시설[3)]
주요목적	내면의 성장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과 실천의 기회 제공	청소년의 사회성을 배양하기 위한 더불어 사는 삶과 자립성과 자존성을 배양하기 위한 실천적 삶을 중심으로 하는 살아있는 교육지향	탈성매매와 자립 지원을 위한 숙식제공, 신변보호,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치료, 진로 등의 프로그램 진행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	-중등 · 고등 검정고시 교과운영 -인턴쉽 과정 설치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문화체험, 음악활동 등 -동아리 활동	-7차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과과정 및 연간 수업일수(228일) -심성계발 프로그램 운영 -수련활동, 현장학습, 봉사활동	-상담프로그램 -인성교육, 치료프로그램 -문화활동 -야외활동 -자립지원(학교,검정고시,직업훈련)

분류내용 \ 기관	늘푸른자립학교	범숙학교	청소년지원시설[3]
		-특화프로그램 '아름다운 도전' 운영, 청소년 뮤지컬 공연	
장점	쉼터입소 유무와 상관없이 탈학교 모든 여자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수시 입학이 가능함	별도의 검정고시 응시 없이, 학교 출석으로 중학교 학력이 인정됨. 자립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서비스 지원	의식주 제공, 심신의 치료, 자립지원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단점	학교 공간이 다소 협소함	경남범숙의집(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청소년에게는 이용 기회가 제한적임
의의	쉼터를 거부하는 청소년에게도 자립의 기회가 제공됨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써의 학력 인정 학교라는 의미가 큼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너무 이른 나이에 '거부'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청소년이다. 그로인한 상처와 분노를 거친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그 표출 결과는 '낙인'이라는 부메랑 다시 청소년에게로 돌아가 꽂히고 있다.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탈성매매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하지만 잘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에는 가출로 인한 낮은 학력, 찾기 어려운 일자리, 청소년을 부추기는 향락 퇴폐문화, 성매매의 장기화로 인한 자포자기,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왜곡,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 및 시설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4] 그러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그 어떤 청소년에게 못지않게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비록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에는 미숙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범숙학교와 늘푸른자립학교가 있는 것이다.

범숙학교와 늘푸른자립학교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라는 점에

3) 홍봉선·남미애(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4) 홍봉선·남미애(2009), 상게서.

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차별성을 두고 있다. 범숙학교는 연극공연과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대안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꾀하고 있으며, 학력인정이 되는 시스템으로 청소년에게 학력취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반면 늘푸른자립학교는 사회통합의 과정으로써 검정고시 준비과정과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취득을 위해서는 검정고시에 응시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쉼터에서 생활하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언제라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범숙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이나 교육과정 등은 매우 안정적이고 훌륭하나, 교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경남범숙의집(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점이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리고 늘푸른자립학교의 경우는 범숙학교의 선례처럼 중학교 학력인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두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타 또래집단과 섞여 있을 때보다 크게 열등감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내 구성원들끼리 가정환경, 과거 삶의 경험, 학습에 대한 욕구, 심리적 상처나 당면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거나 지지해줘야 할 부분을 잘 알고 있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범숙학교와 늘푸른자립학교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희망의 공간이자 행복한 공간이다. 이 두 학교에서는 '성매매'라는 과거의 경험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경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이 존재하는 현재의 위치에서 청소년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이 두 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표정은 매우 에너지가 넘치며 과거 학교경험과 달리 학교생활 자체를 즐기기도 한다.

3. 나아가며

이제 우리나라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시설을 벗어나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청소년은 시설보다는 시설 밖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성매매를 통해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동안 또래집단과 자유분방하게 생활했던

경험들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매우 불규칙하고, 불건전해 보이지만, 그 역시 현재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의 욕구임을 일부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쉼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는 노력들을 보일 것인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범숙학교, 늘푸른자립학교가 생겨나길 바래본다.

> *"이것 저것 상담하고 대화 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늘푸른 친구들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고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 학교가 너무너무 고맙다. 이번 프로그램도 어떤 면에서든 내게 할 일을 주었고 할 수 있는걸 더 만들어 주었다. 나처럼 모든 여러 가지의 무언가가 절실한 친구들이 여러 늘푸른자립학교와 같은 공간에서 많은걸 체험하고 성장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늘푸른자립학교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가 소감문」 중 일부 발췌

◉ 참고자료

손다래(2004), 서울지역의 보호시설에 있는 가출여자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

홍봉선, 남미애(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현장연구

현장연구 **탈성매매 여성의 동료활동, 현재와 미래 전망**

- 탈성매매 여성의 도전, 동료활동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 정책·사업팀
- 장애인 동료활동의 의미 | 송정문
- [좌담회] 동료활동의 미래를 말하다
- 현장활동가 나, 그리고 우리들을 말하다 | 키싱구라미

현장연구

탈성매매 여성의 도전, 동료활동의 시작부터 현재까지[1)]

– 탈성매매 여성 동료활동의 현재적 평가를 중심으로

정책·사업팀 편집정리[2)]

1. 들어가는 글

현장 여성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우선은, '뜨악함'이 적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이전의 활동을 생각해 보면, 물품을 들이밀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기 전에는 웬 낯선 여성들의 등장에 "뭐야?"라는 반응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달랐다. 자신들에게 말을 걸고 뭔가를 건네는 여성들이 낯설지 않았던 것이다.

-엄상미, '피해와 생존을 넘어 삶의 한복판에서',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중에서

동료활동이 성매매 여성 지원의 영역으로 확대 논의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90년대 중반부터 몇몇 기관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이 반성매매 활동과 성매매 여성 지원활동에 직접 함께하기는 했지만, 보다 많은 기관으로 보편화된 것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성매매방지법으로 기관의 역량이 강화되고 사

1) 본 글은 87개소의 성매매피해여성 지원기관 중 3개소(막달레나의집, 새움터, 언니네상담소)에서 진행된 성매매 여성 동료활동(가)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성매매피해여성 지원기관 전체의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 새움터,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막달레나의집에서 그동안 진행하였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료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및 동료활동에 대한 글을 받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이 엮었다.

회적으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식과 관심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해져 본격적으로 '동료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다(이윤미, 2007). 이어 2007년 탈성매매 여성 동료상담원 일자리 지원 사업[3]이 이어지면서 동료활동, 동료활동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다.

본 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성매매 방지운동 및 성매매 여성 지원의 주체가 되는 동료활동이 성매매 방지 현장단체에서 어떻게 시작·발전·변화되어 왔는지, 동료활동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글을 위하여 성매매 여성 지원기관인 새움터,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막달레나의집 동료활동의 배경과 시작, 프로그램과 활동의 변화, 그리고 현재적 평가에 대한 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재구성하였다. 3개 기관은 동료활동의 시발 배경과 시작기간, 운영방식 등이 상이하여 성매매 방지 영역에서의 동료활동을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유효하리라 생각한다.

2. 성매매 여성 동료활동의 배경과 가능성

성매매 방지 영역에서 동료활동의 배경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다. 기관의 상황과 성격,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성매매 여성 동료활동가 양성의 필요성이 있었던 곳도 있고, 자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또한 기존 동료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곳이 있는 반면, 현재 본 사업을 종료한 곳도 있다. 이러한 동료활동의 배경에는 동료활동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다.

그동안 성매매 방지 영역에서 현장성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가 막달레나의집 동료활동 프로그램이다. '막달레나의집'은 동료활동의 시발배경을 다음과

3) 부처공모(노동부-여성부)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탈성매매 여성 동료상담원 일자리 지원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총12개월에 거쳐 진행되었다. 10개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40명의 탈성매매 여성이 참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아이템의 다양화 및 확대를 모색하는 시험대가 되었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사업 참여 경험의 체계화된 축적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 인프라를 강화하였고 당사자 조직의 육성으로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망의 확보도 도모할 수 있었다(김민아, 2007).

같이 얘기하고 있다.

>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성판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접근성은 곧 현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조직들이 겪는 어려움은 바로 현장성의 부재이다. … 그러므로 막달레나의집은 현장성의 의미를 당사자들이 삶을 지원하고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위하여 동료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비록 성매매 체제 안에 있으되 "일과 삶, 그리고 억압과 질곡을 겪어내는 주체"인 당사자 여성들과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이다."

'새움터'의 동료활동은 기관 이념 및 활동 방향과 연결되어 추진되었다. 새움터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운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 운동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특성은 동료상담원의 존재와 확장에 바탕이 되었다.

> "새움터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운동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 운동조직으로 모든 활동의 방향과 내용은 언니들의 의견수렴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새움터 설립을 준비하면서 동료지원 활동가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설립 이후에는 활동가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동료지원 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공동작업장을 설립하였고, 1999년에는 활동가 반수를 동료상담자로 조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동료활동에 대한 필요성 보다 내담자의 자립자활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점차 발전 변화한 경우도 있다.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이하 언니네 상담소)'의 경우이다.

> "2005년 7월 상담소 설치 후 동료활동가 양성의 필요성 보다는 내담자들의 자립자활 욕구가 많아 2006년에 창업에 대한 정보와 실전 대비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더불어 자존감 회복과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작, 진행된 동료활동은 실제 효과성 뿐만 아니라 한계점과 불안함도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기도 했다. ‘막달레나의집’은 이렇게 말한다.

> “막달레나의집에서는 외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수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광범위한 대상을 포용할 수 없는 동료교육의 특성과 한계점을 먼저 인식하였다. … 막달레나의집은 프로젝트를 통해 몇 명의 필드워커를 양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잡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나타냈다. 다만 참여자로 결정된 여성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며 다른 삶을 체험하고 스스로 저울질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3. 성매매 여성 동료활동의 프로그램 및 활동의 변화

이러한 배경 하에 진행된 성매매 여성 동료활동은 실제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한 동료활동가 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이윤미, 2007). 때문에 각 기관에서 진행된 교육프로그램 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성매매 여성 동료활동 발전과정의 자취를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인천 ‘강강술래(현, (사)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의 경우 노동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탈성매매 여성 10명에게 사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인천 학익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소식지 및 관련법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여 동료활동가로 성장하였다. 대구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와 일반지원시설 ‘무명(현, 단디이음)’은 2004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탈성매매를 위한 탈성매매한 여성들의 성매매 여성인권지원활동’을 실시하여 아웃리치와 긴급구조지원, 위기상담활동, 성매매 근절을 위한 증언과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서울 ‘막달레나의집’은 ‘필드워커(field worker)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필리핀 관련 단체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이윤미, 2007). '막달레나의집'은 동료활동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 "동료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삶 속의 인권 찾기', '바로 내가 필드워커', '여성의 몸 제대로 알기', '일과 생활의 건강법', '아웃리치 의미와 방법' 등으로 구성된 기본교육과 멤버십 트레이닝, 용산 성매매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아웃리치 서비스를 위한 교재 제작 워크숍 및 아웃리치 실습, 필리핀 현지의 관련 단체와 공동 주관한 워크숍, 수료식 및 평가회 등으로 구성하였다. 2002년 추진된 동료교육은 심화과정으로 연계되었다(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中 발췌)."

기관설립 준비과정부터 동료활동가가 참여한 '새움터'는 동료지원 활동가들 간의 충고의 기회, 지지의 기회, 경험의 기회, 토론의 기회 등을 통해 동료활동가의 성장과 의식화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 "새움터는 동료지원 활동가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동료지원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일을 확인하고 그들의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활동가들을 통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언니네상담소'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이 심화 발전되었다.

> "2007년에는 자기성장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담자들이 내적 힘을 기르게 되었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Bridge Project - 동료활동가 교육 및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상담소에서는 동료활동가가 상담원과 성매매 여성, 성매매 공간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량의 역할을 하면서 탈성매매를 준비하는 여성에게 효과적인 지지상담을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성매매 여성 동료활동 교육 및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상황과 발전과정에 따라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도 변화·발전하였다. 여성주의와 여성폭력, 여성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성매매 현장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초교육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와 역량강화(empowerment)를 할 수 있게, 그리고 향후 성매매 여성들에게 새로운 역할모델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실습, 현장활동, 행정실무교육 등으로 변화·발전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하여 동료활동은 점차 활동 영역의 확장과 방식의 변화를 갖게되었다. 언니네 상담소는 실제 자활의 욕구에서 시작된 교육이 점차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참여자를 직접 실무에 투입하게 된다.

> "자활 준비를 위한 내담자의 내적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인간관계 훈련과 여성학 교육,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신뢰와 애정이 쌓였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게 되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료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체험 중심으로의 전환, 그리고 사무업무, 아웃리치, 캠페인, 입소자 관리 등의 실무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

동료활동가의 역량강화와 함께 성매매 방지 현장에서 동료활동가들이 담당하고 직접 운영, 진행해야할 분야도 점차 확대되었다. '새움터'의 경우에도 동료활동가들의 사업 참여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새움터의 동료지원 활동가들은 1995년부터 96년까지 새움터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료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이사회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동료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공동작업장을 설립했고, 99년 총회에서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새움터 활동가들의 반수를 동료들로 구성한다.'는 조직적인 합의를 하게 됩니다. 2001년에 직접 새움터 사업의 관리자로 참여하고, 그들이 직접 기획, 실행, 분석한 연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그 해에는 동료활동가들이 기획하고 진행한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에 동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007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지촌 문제 해결을 위한 생존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동료활동의 성과와 의미

동료교육을 통해 동료활동가를 양성하거나 동료활동가가 직접 사업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은 동료활동의 성과 및 의미를 어떻게 진단, 평가하고 있을까. 동료활동의 의미와 성과는 첫째, 현장활동가, 상담자로서의 유의미성, 둘째, 성매매 피해로부터의 극복과 적극적인 삶의 계기를 마련함, 셋째, 성매매 피해 여성과 기관과의 매개역할, 넷째, 역할모델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현장활동가로서의 유의미성

동료활동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상담과 법률, 의료지원, 아웃리치, 실태조사 등의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고, 내담자와 빠르게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성매매 현장에서 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새움터'는 동료활동가의 현장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내담자들은 동료들이 상담자가 된 후에도 같은 동료라는 강한 동질감을 느끼고 편견이나 소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쉽고 편안하게 표현한다. 동료지원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상담' 및 새움터 지원을 받을 것에 대한 권유'를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동료지원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상담소의 익숙하고 수용적인 문화적 환경' 등은 내담자들이 단기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초기부터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2) 성매매 피해로부터의 극복, 적극적인 삶으로의 변화

동료교육과정과 동료활동의 과정은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료교육과정에서 여성주의 시각으로 성매매를 새롭게 바라보고 재해석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삶을 꾸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언니네 상담소'와 '새움터'에서는 동료활동이 참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동료활동은 내담자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세계를 만나게 한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재구성해보면서 '나'라는 존재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다. 갈등이 생기면 하소연도 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말하려고 한다. 내가 소멸되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 희생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 그런 활동가로 발돋음을 한다.…동료활동 과정에 참여한 내담자들이 자기 자리를 찾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 "동료지원 활동가들이 내담자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재해석하고 왜곡된 인지를 개선하여 성매매 피해로부터 좀 더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 그리고 내담자들을 돕는 활동을 통해 동료지원 활동가들은 기쁨과 즐거움, 보람 등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감정은 동료지원 활동가들에게 큰 삶의 위안이 되고 있으며,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신체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졌다."

3) 성매매 피해 여성과 지원기관과의 매개역할

동료활동이 당사자와 내담자뿐만 아니라 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동료상담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업무 개발이나 동료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동료활동가는 기관과 내담자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게 된

다. '새움터'는 아래와 같이 동료활동가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 " 기관의 다리역할을 하며, 경험 없는 상담자에게 동료지원 활동가는 처음 만나는 언니이고, 첫 상담 경험을 하게 해준다. 동료가 아닌 실무자들은 동료지원 활동가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전반적인 감수성과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의 능력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내담자들의 참여가 증가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역할모델이 되다

동료활동가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이 탈성매매 이후 삶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모델이자 멘토가 되면서 성매매가 아닌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일까지 포괄한다. 이는 성매매 여성의 자활과 성매매 여성 지원현장이 성매매 여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현장 친화적인 역할을 창출해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그 모습은 큰 자극이 되고 있다. 그 중에는 자신도 현장(동료)활동가로서 모습을 꿈꾸게 되면서 반드시 현재의 현장활동가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과 기대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기관의 여러 사업에 호의적인 태도로 참여하면서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4]

5. 동료활동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4)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의 쉼터 '불턱'(2007), '사회적일자리실적보고 분석 및 총평', "자활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탈성매매 여성 동료상담원 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관 워크숍",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현재 동료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은 동료활동의 긍정적 성과와 함께 한계점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동료활동가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막달레나의집'은 동료활동가에게 증언자 혹은 보조자로서의 역할만을 부여하게 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동료활동의 성과 및 의미와 함께 동료활동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될 수 있겠다. 막달레나의 집은 동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가 여러 기관으로 전파되면서 자칫 사실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역할, 혹은 극히 보조적인 역할만을 부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둘째, 동료활동의 성과를 확대하고 동료지원 프로그램 구조화가 필요하다. '새움터'는 그동안 활동을 통하여 동료활동의 성과가 몇 개의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동료활동의 성과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동료활동가들이 성매매 현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동료지원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료지원 프로그램들이 구조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지속적인 동료활동의 정착을 위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언니네 상담소'는 동료교육을 통해 성장한 동료활동가가 실제적으로 자활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부족하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 "현장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동료활동이 교육단계에서 종결되거나 프로젝트로 체험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자활의 영역으로 자리 잡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동료활동가로서, 상담활동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성매매 방지활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치확보와 경제적 보

장이 필요하다.”

위에서 지적한 한계점은 앞으로 동료교육 및 프로그램, 동료활동, 동료활동가 양성 등의 영역이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동료활동의 개념과 역할 등의 합의과정과 논의과정 또한 필요하다. 여전히 동료활동가는 동료상담원, 현장활동가, 필드워커, 동료지원활동가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다양한 용어는 동료활동가의 정체성과 역할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동료활동가의 비전을 공유하고 개념과 역할에 대한 합의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김민아(2007), 『종이학희망소식 2007: 성매매방지현장의 실천과 쟁점』,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엄상미(2005), 『동료교육에서 희망을 본다』, 막달레나의집.

엄상미(2007), ‘피해와 생존을 넘어 삶의 한복판에서’,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그린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2008), 「자활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탈성매매 여성 동료상담원 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관 워크숍」.

이윤미(2007), 「탈성매매여성 활동가의 성매매 방지 활동 경험 - “양날의 칼”」,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나윤 외(2006), 『꿈꾸는 삶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자활지원 가이드』, 서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웹진 여성과 인권, ‘자활사업을 통한 당사자의 성장: 탈성매매여성 동료상담원 일자리 사업’ (http://www.stop.or.kr/webzine05/001/001_03_01.asp)

현장연구

장애인 동료활동의 의미

송정문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1. 들어가며

'장애인 동료상담가'[1]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04년의 어느 날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토론회에서 '동료상담'프로그램 중 하나로 소개되었는데,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본인 또한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일반 상담소나 복지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현재의 제도나 정보 소개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도움 받을 수 없었다. 그동안은 장애인 자신의 대담성에 의해 자립생활이 가능한가 아닌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장애인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날 알게 된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정보나 대처방법 등을 같은 장애인 동료로부터 배우는 것으로, 훨씬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비록 장애인 개인의 대담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동료활동을 통해 먼저 자립한 동료의 경험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인간답게 사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았다. 동료상담에 대해 알아가면 갈수록 이 프로그램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인간답게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

1) 장애인 동료활동은 장애인 동료상담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부터 "장애인 동료상담가" 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료상담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2. 장애인 동료활동의 배경과 활동내용

동료상담(Peer Counseling)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을 '동료상담가'라고 부르면서 출발하였으며, 장애의 경험을 가진 대등한 입장의 동료로서 장애인의 여러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작은 서포터'로서 상담에 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장애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조언, 권리옹호를 하는 것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상담방식은 장애인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과거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방되어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첫발을 내딛는데 많은 힘이 된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공식적 기록은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1972년 자립생활센터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및 여성의 공민권사상에 뿌리를 둔 반전시위, 히피문화로 대변되는 반문화운동 등의 자유주의 및 진보적 이념이 활발하게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 호흡 보조장치 등의 의료 지원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사지마비 장애인인 Ed Roberts가 버클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Ed Roberts는 대학생활을 통해 강의실은 물론 식당, 도서관 등 물리적 접근권의 침해를 비롯하여 대학당국이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않아 생기는 제반 환경여건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있어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학교 기숙사에서도 생활할 수 없어 학교에서 운영하던 코웰병원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몇몇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버클리대학으로 더 들어왔고, 이들도 코웰병원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대학에 다닐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병원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유쾌하진 않았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그들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걱정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환경 개선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커져갔다. 결국 그들은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을 세우고, 모임을 만들어 스스로 "롤링쿼드스"(The Rolling Quads)[2]라는 이름을 붙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롤링쿼드스(The Rolling Quads)는 그들의 생활환경을 자문했다. '왜 우리는 병원에서 생활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다른 학생들처럼 버클리市를 자유롭게 다

2) "롤링쿼드스(The Rolling Quads)" 라는 이름은 a quadriplegic(사지마비)의 줄임말로 quad를 이해하면 '행동하는 사지마비장애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니지 못할까?', '왜 우리가 살만한 집이 없는가?' 이렇듯 그들만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날 수 있는 조언자는 결국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이런 "원조"(helping) 전문가였다. 이에 대해 롤링퀴드스(The Rolling Quads)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물론 의사 및 다른 "전문가들"은 장애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생활(living with a disability)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입장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문가는 진정 장애인 자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동료상담가"(Peer Counselors)라고 부르며, 스스로의 전문성을 당당히 알려나갔다. 이러한 관점은 그들 뿐 아니라 세계의 장애인복지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동료상담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지지하고 자립생활로 향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강한 자기신뢰의 근원으로서 인간관계를 재구축하고, 사회를 누구나 살기 편하게 바꾸는 사회 변혁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일본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01).

3. 장애인 동료활동의 변화과정 및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동료상담에 대한 효과가 인정받을 즈음,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료상담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동료상담가가 장애인의 자립을 목표로 하여 생애 전 과정의 상담을 하고 있음에 반해, 동료상담가 양성 교육과정은 단순 프로그램 참여나 자립생활교육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였다.

물론 동료상담이라는 것이 '동료(Peer)'에 중점이 있으므로 동료성을 강조하여 상담방식 등은 개인의 성향이나 인권감수성에 맡겨놓자는 의견도 있다. 또한 현재 장애인 동료상담이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센터 책임자가 동료상담가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동료상담가로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걸러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료상담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발생한 감정적 충돌 사례들이 허다하였는가 하면, 상담자의 지시적 태도, 언어폭력, 성급한 실천요구, 자립생활에 대한 비현실적 방향제시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담진행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점들도 그 동안 적지 않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상담을 받던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립생활에 대한 꿈을 접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원교·박현, 2008).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일에 모험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은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기에 열악한 사회 속에 살면서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스스로 자신을 억압해가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동료상담가이기에 더욱 철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동료상담가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고, 솔직하고,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가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동료상담 또한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동료상담가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지식을 갖추기 위해 대학졸업장 등 학력을 필요로 한다거나 대학과정 속에 개설해서 교육받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학졸업장 등 학력으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동료상담의 특성을 희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체 장애인 중에서 의무교육의 기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49.5%에 달한다. 고등학교 교육까지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65.4%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3]. 현실이 이러한데 장애인 동료상담 교육과정을 대학에 개설하거나 대학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상담교육 참여조건을 제한하게 되면, 결국 극히 일부의 장애인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동료상담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무학'이라는 조건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험은 동료상담 영역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은 학력과

3)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무학 16.5%, 초등학교 이하 33.0%, 중학교 이하 15.9% 고등학교 이하 24.4%, 대학이상 10.2%의 학력으로서 초등학교 졸업학력 이하의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49.5%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09).

상관없이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현재 장애인 동료상담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좀 더 체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장애인 동료활동의 의미

상담에서 라포(rapport)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상담가들에 의하면 라포형성만 성공해도 상담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말까지 한다. 그런데 장애인의 문제에 비장애인이 개입할 경우, 라포형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차별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경험이 있는 장애인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 과정에서 '너는 비장애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너는 상담가이니 그렇게 말하지' 등의 반응이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내담자와 상담가가 같은 장애인인 경우, 특히 같은 유형의 장애인인 경우는 라포형성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내담자가 신뢰할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인이 부모와 독립하여 살고자 할 경우, 앞서 독립해 살고 있는 같은 뇌병변 장애인이 상담가가 된다면 이미 내담자는 해답을 찾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담자의 미래 중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상담가가 바로 동료상담가이기 때문에 그 파워는 무한할 수 있다.

기존의 비장애인에 의한 장애인 상담의 경우,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부모 등)를 통한 치료나 재활 또는 문제행동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장애인이 처한 장애정도나 문제행동 등에 주관심이 있다 보니 현 장애인의 심리상태나 미래에 대한 자립생활 욕구에 대해서는 개입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듯 동료상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그 안에서 상담가와 내담자가 함께 문제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상하구분이 없다. 즉 동료상담가는 내담자의 외부에서 문제를 본다. 상담가는 우선 환경을 보고, 클라이언트가 한층 더 자기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환경의 어느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가를 클라이언트 자신이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감정의 해방 즉 억압의 상처를 동료의 입장에서 다루게 된다.

장애인 동료상담에서의 동료상담가 역할[4]은 여섯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상대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듣는 것. 둘째, 클라이언트에게 적극적인 자기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셋째, 상담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신뢰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내담자 자신의 아팠던 추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스스로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 넷째, 장애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다섯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이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마지막 여섯째는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결정을 자기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동료상담은 기존의 전문가 상담과는 달리 공감대 형성이 더욱 순조롭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기결정권[5]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5. 나오며

다양한 영역에서 동료활동이 활용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알콜 중독자들의 모임을 통해 서로 카운슬링하고 서포트하며 실시되었던 코-카운셀링(Co-Counseling)에서부터 유래한 동료상담은 현재 청소년 또래상담, 장애인 동료상담, 사관생도 상담 등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장애인 동료활동의 상황[6]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영역을 넓혀 동료활동을 적용하다보면, 동료활동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실행한다면 동료활동은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4) 일본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2001), 동료상담의 모든 것, 정립회관 역.
5) 자기결정권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행동이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지금까지 동료상담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발생한 감정적 충돌 사례 및 상담자의 지시적 태도, 언어폭력, 성급한 실천요구, 자립생활에 대한 비현실적 방향제시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담진행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점들도 그 동안 적지 않게 드러났다.

좋은 모델이 될 것은 확실하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동료상담이 소개되고, 선구자 역할을 했던 장애인 동료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지금은 각 지역에서 자립을 해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당사자에 의하여 자립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일 것이다.

본인의 경우 1급의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여성으로서, 그리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장애를 가진 엄마로 살고 있다. 그 경험 더하기 활동가라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위의 많은 장애여성들을 선동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그들의 또 다른 경험은 또다시 다른 장애인들의 파워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동료활동의 힘 중 하나라 생각한다.

그저 개인의 힘을 키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동료활동이라 믿기에!

◉ 참고문헌

송정문(2009), 장애인 동료상담가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본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2001), 동료상담의 모든 것, 정립회관 역.

이원교·박현(2008), 2008년 7차 회의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동료상담위원회.

임기현(2003), 중증장애인의 동료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www.knil.org/,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2003), 동료상담 자료실 20-21번 자료 : Steve Brown, 동료상담 - 권익옹호 중심의 동료지지(원제; Peer Counseling - Advocacy Oriented Peer Support)

[좌담회] 동료활동의 미래를 말하다[1)]

성매매 방지현장에서의 동료활동은 탈성매매 여성 자활의 영역이자 반성매매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발전해왔다. 본지는 "동료활동의 미래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현재 성매매 방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 기관의 동료활동가들과 동료활동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일　시: 2010. 4. 15(목)
•장　소: A기관 회의실
•참석자: 박○○(A기관 쉼터 동료활동가)
　　채△△(A기관 자활센터 동료활동가)
　　진□□(A기관 상담소 동료활동가)
•진　행: 김옥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장)
•정　리: 최선화(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아팠던 경험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료"라고 하지요.

김옥녀(이하 김)　동료지원을 하는 동료활동가는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료활동가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습니까. 동료활동가가 된 동기와 동료활동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이하 박)　성매매 방지분야에서는 동료활동가는 '현장활동가'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어요. 성매매 방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성매매 방지현장에서 어느 정도 서로 합의된 용어가 '동료'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장애

1) 본 좌담회는 한 기관의 사례로 전체동료활동가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

인 단체나 동성애 단체 등 어느 현장에서나 동료라는 단어가 사용되잖아요. 동료가 현장에서 함께 뛴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편한 개념이더라고요. 처음 동료활동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막연했어요. 처음부터 활동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동료활동가의 길을 간다고 하기 보다는 자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동료활동가였습니다. 실제 동료활동가가 되어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거나 여타 활동을 할 때, 서로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지요. 그래서인지 대화하기가 편한 부분도 있어요.

채△△(이하 채) 처음에 동료활동가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는, 말 그대로 '동료', 서로 마음 알아주고 아팠던 경험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동료활동이라는 개념이 참 편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앞의 선생님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와 라포형성이 잘 되듯이,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인 자활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작업을 하면서 저와 가끔씩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얘기가 잘 되는 이유는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일을 했고, 또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박 동료활동가가 된 과정을 얘기하자면, 정식상담원이 되기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기관 대표님 말씀이 3년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동료활동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자활에 성공해서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로 취업이 쉽지 않았고, 이력란에 채울 수 있는 경력이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동료활동가가 되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안을 받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고등학교에도 진학하게 되었지요. 검정고시가 아니라 학교에 입학했던 것은 저의 이전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과 부딪혀보고 싶었거든요. 직접 접해보니까 '아, 사회가 그렇게 빡빡하지 않구나. 내가 성매매를 했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면, 빡빡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나를 한 단계씩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원 양성교육도 받고, 또 상담원이 되면

서 이력서도 써보고 면접도 보았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를 한 단계씩 성장시켜 주었다고 봅니다. 이전에 제가 기관에서 지원받는 사람으로 존재했었다면, 이제는 내가 성공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주어지는 단계로 볼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는 좀 무겁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뿌듯함도 존재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너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공부든 자격증이든 네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빨리 못하고 이제 했니...' 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활동가가 되어서 친구들(성매매 피해 여성)을 만나고 상담하러 다닐 때, 처음부터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제 자신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오픈하지 않았을 때와 어느 순간이 되어서 오픈했을 때는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더 가깝게 와 주고, 어떤 때는 '선생님은 멋진 것 같아요. 열정이 있어 보여요'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생겨요. 동료들의 응원메시지 하나가 동료활동가들에게는 최고의 힘이 되지요. 더 잘해야지 라는 결심도 하게 됩니다.

동료활동가는 고로 스며드는 물처럼 각지에 섞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다리 같은 사람, 이게 동료활동가의 전문성이죠.

김 말씀을 들어보니, 동료활동가와 성매매 피해여성(내담자) 사이에는 서로 큰 지지체계가 형성된 듯합니다. 성매매 방지현장에서 동료활동가만의 특별한 역할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박 제가 생각하기에 동료활동가는 동료(성매매 피해 여성)와 비경험 활동가 사이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다리인 것 같아요. 비경험 활동가에게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는 게 있으면, 자활을 준비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채워주는 다리역할을 하지요. 가끔 동료활동가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분상승의 도구라고 할까요? 내가 과거에 성매매 경험여성이었는데, 활동가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뭔가 신분상승을 하듯이, 하나의 계급이동을 원하면서 동료활동가에

도전하신다면, 동료활동가로 활동을 못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활동가가 되었을 때, 활동가라고 해서 친구들(성매매 피해 여성)한테 내가 권력으로 누르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친구들과 선이 그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나를 생각할 때 '너는 활동가가 되었잖아'라고 벽을 두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동료활동가가 되어서 나 혼자 왕따가 되는 느낌을 받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활동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자기가 잘 하면 친구들하고의 벽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채 기관에서 바라는 동료활동가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역할모델의 하나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이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되고, 참 힘들잖아요. 나에게 활동가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정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하고, 또 찾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하죠. 사람들은 동료활동가를 그냥 좋다고만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고 정리한다는 점에서 생각보다는 힘들다는 생각도 합니다.

박 처음에는 업무를 익히고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막 활동가가 되어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반면에 실전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상담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빨리 친밀감을 갖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나는 지금부터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행정업무를 배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업무처리과정이 보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업무라는 게 틀리고, 고치고, 다시 익히면서 그 능력이 늘어가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도 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동료활동가는 고로 스며드는 물처럼 각지에 섞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내가 스며들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데 그냥 중간에서 정체만 되어 있으면 활동가와 친구들이 섞일 수 없잖아요. 그 사이에서 내가 물처럼 스며들어 섞어주는 역할, 그게 동료활동가의 역할이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김 조용히 스며들어 서로를 섞어주는 역할이라는 말이 동료활동가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동료활동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피해여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여성들이 많은 부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이하 진)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빨리 친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경험자이기 때문에 더 불편해하고 못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률지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경험 활동가들은 대학도 나오고 아는 것도 많고 지원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들을 더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편한 이야기는 동료활동가에게 하는 게 편하겠지만, 지원부분에서는 비경험 활동가를 더욱 믿을 것 같아요. 동료활동가가 어느 부분에서는 더욱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박 그런 측면이 없진 않지요. 그래도 동료활동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지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법률지원을 하면서 10년 전 사건의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내 경험을 토대로 '아, 그때는 검진을 했지. 그럼 검진보고서를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놓쳤을 부분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를 보면 긴급구조를 할 때, 업주가 어느 곳에서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 아무래도 용이하지요. 일단 동료활동가가 있음으로 해서 친구들이 탈성매매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갈피잡지 못할 때, 그들에게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저 사람도 성매매 경험을 한 동료이지만 우리 안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나도 조금 열심히 하면 다른 삶을 살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것 자체가 전문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활동가가 됐어요'라고 하면 '와,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해주시거든요. 이 사람이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동료활동가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활동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소진과 자격지심, 두려움, 그리고 여성들의 재유입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김 동료활동가가 성매매 피해여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관과 여성들 사이의 다리역할을 하는 것 등을 보면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감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채 처음 동료활동가로 일을 시작할 때 무척 힘들었어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업무도 익히고 파악해야 하는 반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하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맞아야 해요. 문서작업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배워야 하는데, 걸음마가 아니라 기는 것부터 하나씩 올라가야 했어요.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동료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하루에 열 번 스무 번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해야 해요. 문장 하나를 써도 이 단어를 써야 할지, 저걸 써야 할지 등을 고민해야 했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교육과정에서 글쓰기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대로 썼다면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르거든요. 보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으로 써야하더라고요. 문서작업이나 컴퓨터 활용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도 힘들게 배워 지금은 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작은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박 아무래도 자기가 담당하는 내담자가 예전 동료였다면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전에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오픈해야지 이 사람과 관계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담자가 내가 하는 지원이 만족스러울까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요. 인간적이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동료활동가의 역할은 중요한데, 반면 지원과 관련한 전문적인 능력은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하지요.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저희가 5

년 정도 여기 머물면서 3년은 내담자로 2년은 활동가로 활동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동료활동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고루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가 소진될 때도 있고 자격지심이 있을 때도 있고 두려움도 갖게 될 때도 있지요. 내담자와의 관계든 지금 활동가 동료와의 관계에서든, '우리를 신뢰하여 일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또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다른 활동가만큼 업무능력에 자신이 있을까' 싶으면서 겁이 나고 한발 물러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뜻 못 다가가고 제 스스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3년이라는 시간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해도 직접 실무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배제할 수 없잖아요.

채 동료활동가로서 가장 힘들 때는, 사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면서 생기는데요. 내담자들이 제게는 '앞으로 탈성매매 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락이 두절되고 재유입 될 때가 가장 힘이 빠지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일한 게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배운다는 자세로 있으니까 힘들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배우고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여서 특별히 힘든 건 없어요. 평생 친구들과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넓게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느티나무 언니가 되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고 지지해주는 것, 힘들지만 이 일을 지속시키는 힘인 것 같아요.

김 내부에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미묘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래도 동료활동가를 지속시키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주변에서 지지해주는 것이겠죠. 동료들, 활동가들의 지지요. 동료활동가가 된 지금까지도 중간에 때려치워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앙탈도 많이 부리고 활동가들에게 반발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활동가가 되면 이 사

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들을 잘 이해하는 활동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담자들에게 정말 불편하지 않게,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대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요.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을 하면서 항상 내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죠.

채 나는 아직 활동가로 갈 길이 먼데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을 때는 힘도 들긴 해요. 하지만 저에게 잘했다는 칭찬과 더불어 개선점을 알려주면 소진되었던 것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나에게 더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지적받았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오해하지마세요. 잘 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면 다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준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죠.

박 저희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담자로서 보호받고 지내왔기 때문에 활동가로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일하면서 느끼게 돼요. 물론 선입견일 수 있지요. 지금 처음 했다면 두 번, 세 번할 때 더 향상될 거니까 믿어주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어주는 것, 지지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죠.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 힘들지만 이 일을 하도록 지속시키는 힘인 것 같아요.

진 기관에서 사무 업무를 동료활동가에게 분담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기를 살려주는 게 필요하죠. 처음에는 누구든 몰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느린 사람도 있잖아요. 기관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게 상호 필요한 것 같아요. 동료활동가가 우리가 먼저 된 입장에서 물어봐 주는 게 필요하죠.

박 저희가 처음 교육을 받을 때 10명이 시작했거든요. 한사람은 홈패션 강사를 하고, 다른 사람은 결혼도 하고,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동료활동가는 아니지만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일하면서 불이익을 안 받을 정도의 인권 교육을 받

게 되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성매매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요. 특별하지 않은 교육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니까 여기 안에서 지원하는 활동가도 있지만 밖에서 뛰는 활동가도 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활동가가 아닌가 싶어요. 굳이 사무실이 아니어도 뭔가 같이 배우고 그것을 잊지 않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채 처음 동료활동가라고 했을 때는 상담소나 지원시설 등에서 일하고 상담원 자격증을 따야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좀 지나서 보니까 활동가는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없을지언정, 밖에서 무슨 일을 하건 본인이 재유입만 안하고 탈성매매해서 자기 소신껏 행복하게 사는 것도 활동가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것도 활동가라고 생각해요. 앞의 선생님이 소개하신 홈패션 강사 분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자신의 역량을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활동 아닌가. 나중에 본인이 힘이 되면, '내가 어떠한 과정으로 지원을 받았고 결국 강사가 되었다, 누구누구에게 강의를 하고 지식을 나누면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죠.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활동가라고 생각해요. 동료활동가의 개념을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른 곳,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 있지만 늘 반성매매운동과 여성인권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김 **동료활동가로 활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채 내담자들을 만나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고 같은 일을 했었다고 하면 믿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단하다', '동료활동가 할만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과 대화를 했다면 이해 못했을 텐데, 경험자 간에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요. 비록 지금의 동료활동가가 중간

매개자로의 역할을 하지만, 기관에서는 동료활동가를 어떻게 육성하고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동료활동가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동료활동가의 노력도 중요하고,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료활동가들 중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뒤쳐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야 해요.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동료활동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 예전에 '동료활동가 일자리창출 사업' 등도 있었지만, 그것과 지금 동료활동가로서의 일상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서서히 신뢰를 형성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고민을 주지 않고 조금씩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저 단계에서는 저렇게 하는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장경험도 늘리고. 그래야만 동료활동가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료활동가라는 신뢰감도 쌓이겠죠. 지금 현재 제가 동료활동가라고 하면, 성매매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라는 것이잖아요.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활동가라는 거죠. 동료활동가는 소통만하는 자체로서도 이렇게 역할이 부여되니까,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나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처리 능력도 필요해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매매 방지분야에서 처음으로 동료활동가가 되신 분이잖아요. 저희의 경우, 동료활동가 선배가 없었고 저희 뒤에 되신 동료활동가 분들에게는 저희가 힘든 부분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나도 이때는 이렇고, 이때 이런 고민을 가졌다'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자기 스스로 익히고 터득해야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자신 안의 힘을 키워야 동료활동가로서의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생기게 되요. 저는 동료활동가가 가장 쉽게 되면서도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활동가 역할과 동시에 비경험 활동가의 역할을 해야 하지요. 현재로는 각자가 일을 쌓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요.

진 지금 현장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비경험 활동가들 대부분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이해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힘들거든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가며 지원하지만 법률지원도 상당히 힘들어요. 동료활동가가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교육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현장 선생님들은 잘 이해하겠지만 동료활동가의 경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료활동가한테 맞는 교육 매뉴얼이 필요해요. 또 다른 측면으로 여성주의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전문성을 갖추려면 월등하게 뛰어난 것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업무능력까지 동료활동가의 전문성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활동가들이 우리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한계도 있거든요. 100% 알려주었다고 하지만 동료활동가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50%밖에 안 되면 그만큼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 기관에서의 교육과 교육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기관에서 책임을 끌고 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기관에서는 상담원 자격증을 가진 활동가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부적 갈등을 조정할 활동가도 필요해요. 정부에서 동료활동가라는 직업을 만들고 보다 안정적이게 동료상담원을 키워 주는 게 필요해요. 성매매 방지현장에서는 여성들의 재유입을 막고 서로를 섞어줄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야 같이 움직여 자활도 성공하고 탈성매매도 성공할 수 있게 돼요. 정부에서는 '기관에서 알아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 탈성매매 시켜라'라고 하지만, 사실 성매매 여성에게 크게 와 닿지는 않거든요.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자활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 100시간 일해서 40몇 만원, 130시간 일하면 60몇 만 원 등을 얘기하면, '그냥 말지요'라고 얘기해요. 저도 멘토링할 때, "여기 작업장이 있는데, 130시간 일하면 65만원 드리고요"라면, 웃으면서 "네네" 한다고요. 자기가 필요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은 또 다시 재유입을 한다는 거죠. 60몇 만 원이 작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친

구들이 풍족하지 않아도 재유입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의 현실성 있는 금액이어야 할 것 같이요. 그러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차라리 어디 한군데서 주관을 하고 과정으로서의 일자리로 일하는, 이 안에서 활동가처럼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보다는 기간을 두고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상담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친구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지속되면 사회에 나가더라도 자존감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동료활동이 나에게 주는 의미이지요.

김 동료활동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의 안정적인 것을 찾았을 수도 있고,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능력도 향상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업적으로나 또는 다른 측면에서 동료활동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박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활동가로 일하면서 즐거움도 있지만, 이 일을 하면서 내 소양이 쌓일수록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욕심을 내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큰 힘을 얻은 것 같고,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활동가가 되어서도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성매매라는 단어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동료활동가를 하면서 '나'라는 인간 하나만을 보았을 때 무한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지요.

채 저는 지금 제 이름이 불리어진다는 점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기관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전에는 그 일을 했지만,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더 나아지고 있어. 발전하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지요. 이곳이 아니었다면, 다른 세상을 못보고 우물 안에서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다른 세상을 보고 있고 시각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졌어요. 동료활동가는 나에게는 꿈이고 미래고 희망입니다.

진 저 개인적으로 보면 동료활동가라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동료활동가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탈성매매를 한 여성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그 친구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나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성장해서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에게 있어 동료활동가라는 의미가 나와 너의 성장이라고 봅니다.

채 저희의 경우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관대표님도 그렇고, 활동가들도 그렇고, 우리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을 돕고 싶다고 할 수 있잖아요. 동료활동가는 그것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지요.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미래는 동료활동가가 주축이 되어서 세상에 대고 STOP! 성매매!를 얘기해야 해요.

김 마지막으로, 동료활동을 보다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동료활동가들은 자조모임을 통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스크랩도 하고 자유토론도 진행하고 있어요. 자조모임은 성매매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자가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상처받지 않고 계속 반성매매운동을 하려면 힘을 키워야하거든요. 과거 경험여성이란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자조모임에서 키워야만 당사자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당사자 자조모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낙인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감추게 되거든요. 저는 지역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당사자운동, 반성매매운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통해서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세 개 정도의 자조모임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 활동을 하다 지금 쉬고 있는 곳도 있어요. 자조모임이 전국에서 활성화되어야 당사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확장되고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각 지역의 동료활동가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지역모임 등을 활성화 하면 서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동료활동가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네트워크가 없어지면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 저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료활동가는 저에게 있어서 성장이자 자부심이고 당당함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겠지요. 처음으로 시작했던 동료활동가로서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끔 체계적인 것들이 주어지겠죠. 누구나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채 기관간의 네트워킹은 동료활동가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좋은 방법이지요. 기관마다 체계가 다르지만 동료활동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여성주의나 인권 등의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도 못하고 듣기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관마다 동료활동가를 위해 각 지역 동료활동가들이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선배 동료활동가가 없는 현실에서 동료활동가를 준비하면서 오는 동료활동가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려움 등에서 벗어나서 참 쉽네, 괜찮네, 등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다가서는 거지요. 현재 동료활동가에 대한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네트워크 자리가 마련된다면 함

께 공부해 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소통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과 기관의 소통이 필요하지요.

박 동료활동가로 다져지기 위해서는 동료활동가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3~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 긴 시간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동료활동가를 너무 조급하게 양성하는 것보다 동료활동가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적 성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사람을 대할 때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고 받더라도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진 저는 동료활동가 확산을 위해서는 체계적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을 다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들의 아픔이 밀려오는데, 그걸 다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이 체계적인 교육이지요. 이를 통해 동료활동가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박 현재 성매매방지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 법에 대해 존폐여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닌데 왜 자꾸 그럴까를 생각해봤어요. 당사자들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존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래는 동료활동가가 주축이 되어서, 자조모임이 성장해서 세상에 대고 성매매를 왜 근절해야 하는 지를 얘기해야 해요. 동료활동가가 같이 가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져가야 할 아젠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봐요. 지금은 성매매라는 얘기만 들어도 움츠리게 되지만, 사람들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세상에 목소리를 내다보면 성매매가 줄어들고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동료활동가의 미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채 맞아요. 활동가가 된다는 게 어떤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단단해져야해요. 동료활동가는

일반활동가와 다른 점이 지원하는 가운데 반성매매 운동성도 가지고 있어야해요. 지원과 운동을 같이해야한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말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대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죠. 현재 성매매 방지운동은 당사자 운동이 아닌 대리운동이잖아요. 대리운동은 당사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요. 이를 집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활동가가 되어야겠지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인 것 같고요.

김 이 좌담회는 그동안 동료활동의 의미와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긴 시간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활동가[1] 나, 그리고 우리들을 말하다

키싱구라미[2]

1. 들어가며

2005년 쉼터 야간당직으로 시작된 현장활동은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과 역할로 진행되고 있다. 현장활동가의 소통을 위한 논의구조로 회의가 조직되고, 각 영역(쉼터, 자활, 상담소, 당자자운동까지)에서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은 현장활동가의 관점에서 활동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의 고민지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며 정리해본다. 본 글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면서 겪었던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각 지역마다 현장활동가의 의미와 역할은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바이다. 또한 동료활동가라는 명칭이 현장활동가로 변경되면서 모든 용어는 현장활동가로 바꾸어 정리한 점을 미리 제시한다.

---

1) 2006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프로젝트 기획팀은 2004년부터 우리들을 지칭했던 '동료활동가'라는 명칭을 '현장활동가'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동료활동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모호성(누가 동료인가?)과 차별성(낙인)에 대한 문제제기로, 그리고 성매매 경험을 했던 당사자의 의미를 담은 용어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현장활동가'라는 명칭은 기존의 성매매 공간의 현장의 의미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장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2)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 함께한 성매매 경험 당사자 자조모임의 명칭이다.

2. 현장활동가를 꿈꾸다

2004년 10월 성매매 현장을 나와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고, 그해 12월 '현장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과정'을 받았다. 교육과정 속에서 성매매 공간에서 인식된 성매매 경험에 부정적 낙인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었다. 성매매 현실을 보면서 성산업 구조 안에서 피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현실을 인지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선배활동가의 만남을 통해 조금 더 현장활동가의 길을 꿈꿀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현장 안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중간 소통자, 상담원, 매니저, 강사,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등)을 찾아내며 서서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였다.

현장활동가 양성교육은 우리들의 잠재된 능력과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계기였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주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자신의 상처치유, 언니들에 대한 이해, 신뢰와 믿음, 체계적인 교육, 현장실습, 자신감, 타기관 방문, 건강 등)을 찾아내고, 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기초과정을 수료하면서 나는 '성매매라는 경험이 새로운 자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과 '직업 갖기와 보람된 일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우리들에게 현장활동가는 다양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한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3. 현장활동가 길을 걷다

"나와 똑같은 아픔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언니들(성매매 피해 여성)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언니들을 위해 안내자의 역할, 이와 더불어 성매매 경험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경험을 자원으로 동료들과 같이 나누고 새로운 삶을 함께 준비하는 지지자이며 동료" 이것은 우리들이 정리한 현장활동가의 역할이자 정의이다.

2005년 1월 쉼터 야간당직을 기점으로 현장활동가로서의 역할이 주어졌고,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 법률과정에서의 경험, 성매매 현장 안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많지 않았던 탓인지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빨리 되었던 것 같다.

짧은 준비기간, 감정컨트롤의 실패, 예상 밖의 위기상황, 현장의 경험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무식함(?), 구체적인 역할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무기력감이 나를 지치게 하였다. 그 무렵 '현장활동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확정되었고, 쉼터에서 자활로 옮길 것을 제안 받았으나 곧바로 옮기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실패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쉼터활동에 대한 나의 집착과 미련이었을 것이다. 5개월간의 나의 쉼터활동은 자활지원센터로 옮기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이후 '현장활동가 양성을 위한 중급교육과정'을 통해 현장활동가의 자세와 역할, 자존감 향상, 자기관리, 인권강의, 타기관 방문 등 좀 더 심화된 과정을 수료하면서 현장활동가로서의 비전을 그려가기 시작하였다.

자활에서의 나의 모습은 일자리 참여자로 상근활동가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부작업장을 맡았고, 틈틈이 외부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비전을 그려갔다.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현장활동가'+'상근활동가'가 되면서 나는 길을 잃기 시작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나의 오만과 자만심이었다. 나는 그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었고, '언니'라는 호칭 보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좋아졌고, 상근활동가로 소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친구들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 그러면서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나의 상황을 보면서 아찔함을 느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였지만, 현실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언니들과 활동가들에게 불편한 존재는 아닌지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후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는 자조모임을 시작해 보는 것을 제안 받고, 자조모임을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웠던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모임 '키싱구라미'는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 친구들과 파트너가 되어 우리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

는 것이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내 역할을 찾은 듯한 느낌은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자조모임 안에서도 '현장활동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토론과 교육이 진행되어졌다. 나의 실패에 대한 경험담은 현장활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하였지만, 이후에도 나 같은 실수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자신의 정체성, 역할, 관계) 이는 현장활동가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서로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현재 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4. 현장활동가의 미래를 말하다

반성매매 운동 안에서 '현장활동가'라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고 시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피해자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 삶의 주체자로 인정해 주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과정이었다.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는 과정에 지금도 서 있다. 또한 현장활동가의 영역을 현장에서의 업무로 그치지 않고 당사자운동을 고민하는 주체로서 확장해내고,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당사자 운동 주체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이기도 하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현장활동가, 자조모임회원)들의 비전은 자조모임과 당사자 운동이며, 이후 비범죄화 운동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해진 낙인을 해체하는 운동과 더불어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려내기 위한 작업들이 현재의 과제일 것이다.

현장활동을 꿈꾸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바라는 친구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현장활동의 시스템을 만들고 기회를 양성하는 과정까지 지역단체의 몫으로 남아있다. 앞으로 현장활동가 육성과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 지역단체의 지원만이 아닌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현장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의 주체와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

논문리뷰

논문리뷰

-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범위의 확장으로 | 정경숙
- 어떤 남자들이 성구매를 하는가? | 최대헌
- 성을 사는 남성들 : 그들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 | 신혜수

논문리뷰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범위의 확장으로

김인숙(2009),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경숙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소장

1. 서론

2004년 12월부터 실시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성매매 집결지라는 공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립된 섬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감금과 착취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법률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정부 정책을 통해 집결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탈업소 및 탈성매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에 의한 탈시설화 지원은 집결지 여성이 기존에 구축된 사회적, 인적 인프라를 이용하고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때문에 자활지원사업은 자신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집결지 여성들이 정부 정책의 개입을 통해 주체적으로 탈업소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살림, 2009). 그동안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사업을 수행해 왔던 단체들에서 꾸준히 있어 왔으나, 성과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는 2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하나는 최희경·정경숙의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탈성매매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김인숙의 '성매매 집결지 자

활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이다. 두 논문의 차이점은 전자의 논문은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한 곳 중 부산 완월동 지역 한 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후자의 논문은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진행한 혹은 진행하고 있는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김인숙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의의와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김인숙(2009) 논문의 의의는 첫째, 전국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수행 단체들의 자료를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성과 분석의 도구로는 집결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웃리치를 통한 현장방문 및 상담의 가능성 정도, 기관별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통한 지역 사회의 변화 등 단체의 역량과 외부적인 요인,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으로써 인구사회학적 요인, 지원프로그램(생계비, 의료비, 법률지원비, 직업훈련비), 상담횟수 및 기간, 종교, 지지체계의 유무 등 다방면의 접근을 통하여 여성들이 탈업소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의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금까지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특히 2004년 성매매방지법 이전까지는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유입 동기나 그들의 경험 등 주로 개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다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여성들을 법적 제재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정책의 필요성을 연구하거나, 성매매방지법과 피해여성 지원의 효과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접근의 제한성으로 인해 주로 질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의 연구는 전국적인 집결지를 대상으로 1,424명이나 되는 여성들에 대해 자신들이 제공받고 있는, 혹은 제공받은 적이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를 양적 조사를 통해 파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집결지 사업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 정당한 반박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집결지 사업 초기에 업주들의 저항이나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주도적인 담론(성매매 합법화 논쟁)은 집결지 사업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특히 집결지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성매매 여성들의 재유입 등)', '성매매의 음성화', '집결지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 등의 잘못된 인식때문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으며, 집결지 주변 지역 사회의 반발도 상당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집결지 업주들이 감사원에 국민 감사 청구를 하여 현장 단체가 국민 감사 청구를 받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이 이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뒷받침 해주어야 할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불신을 받는 정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 이후 국회에서 집결지 자활사업을 무력화 시키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며, 현장 단체들은 집결지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부재로 인해 개별 사례들을 수집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위의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과 타당성 등 객관적이고 양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집결지 여성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대와 아울러 이 연구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탈성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책의 부재나 낙인, 인구사회학적 문제, 선불금 등 빚 관련 요인 등으로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적 조사의 한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탈성매매의 요인을 복합적이고 다방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통합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집결지 사업을 수행했던 사업 시행의 주체로서 이러한 의문에 기초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탈업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책 투입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고 본다. 정책투입의 문제 외에도 첫째, 성매매 집결지 주변 업소를 드나드는 성구매자, 성매매 여성, 업주, 관리자 등을 상대하는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성매매 집결지와 그 속에 있는 여성들은 지역 사회 전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슈퍼, 목욕탕, 세탁소, 음식점, 점집, 여관, 택시기사 등에서부터 지역 은행까지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집결지에 의존하는 상권을 형성하고, 이들은 성매매업소 업주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업소 매상에 의해 본인의 수익이 결정되며 업주와 동일한 이해관계로 얽히게 되면서 결국 집결지 여성들이 지역 사회 수익 창출의 볼모가 된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생활 반경과 인간관계가 집결지 내부로 한정되어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특성을 들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까지 집결지에서는 여성의 외출이나 외박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집결지 여성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구매자나 업소에 관계된 사람들 밖에 없었다. 설

령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일을 하면서부터 사회적 낙인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이전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최희경·정경숙, 2009).

둘째, 주변의 지지 관계의 상실이다. 집결지에서의 생활은 고립된 섬과 같다. 많은 경우 성매매 여성들의 가족 환경이 지지적이기 보다는 이들을 가족 밖으로 내모는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업소에 처음 들어갈 때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계약 조건, 선불금 등의 경제적 속박과 착취, 폭력과 강제를 통해 유지되는 성산업의 구조 속에 있다. 성매매 바깥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고립의 결과로 더 나은 대안이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는 운명론적 체험과 업주들로부터의 실질적 위협, 예기불안에 의한 현실 순응의 결과로 인해 탈성매매를 포기한다(이근무, 유은주, 2006).

셋째는 선불금에 의한 빚 문제이다. 현장에서 상담할 때 가장 처음 나오게 되는 질문들이 선불금에 대한 것들이다. 위 논문에서는 법률지원의 여부가 탈업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그것은 지역에 따른 집결지 특성의 다름과 함께 집결지의 특성상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5년 이상 그 지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업주와의 부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즉 가족, 친구, 친척들은 자신을 외면했는데, 업주들은 자신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 주었다는 생각 때문에 업주를 고소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면서 자신이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희경·정경숙의 2009년 논문에서는 법률 지원이 탈성매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산 완월동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은 집단의 탈성매매율이 법률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인숙 교수의 논문에서 보여지 듯 부채가 있는 경우가 74%이고 부채액의 평균은 3,009만 원인 것을 보더라도 대다수의 여성들이 선불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탈성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주거의 문제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집결지에서 10-20년을 일했더라도 착취적인 구조 속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사채나 신용불량으로 인해 탈업소하여도 생계가 어렵다. 게다가 구직 과정에서 연령 제한이나 학력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부산 완월동의 사례를 보면 여성들은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드물며 30대 이상의 여성이 6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

에서 취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힘들게 취업하더라도 대부분 식당 서빙, 모텔 청소, 찜질방 청소, 옷가게 점원 등 임시 고용이나 일용직 형태로 종사하여 저소득 임금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취업은 사회 빈곤층을 더욱 두껍게 하는 데 일조할 뿐이다. 이러한 형태의 취업은 복지 서비스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한 자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또 다른 형태의 자활 서비스 즉 탈성매매 후 최소한의 생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2007년 살림이 조사한 완월동 여성들의 주거 현황을 보면 전·월세가 탈업소 여성의 64%, 시설 입소 4%, 자가가 3%이며, 상담 중지 재유입이 29%로 나타나 주거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의료 지원 정책의 수립이다. 성매매방지법상의 의료 지원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김인숙 교수의 논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의료 지원의 협소성으로 인해 그 지원의 효과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생계비나 직업 훈련으로 이어지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결지 여성들은 오랜 성매매 생활로 인해 대부분 만성 골반염 등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위염, 당뇨, 갑상선 등의 내과 계통 질병을 갖고 있다. 중장년층 여성들의 경우 성매매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 몇 십년동안 지속적인 약을 복용함으로써 치과 질환 등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홍반성 루프스 등의 희귀 질환도 있어 불안정한 건강 상태에 놓여있다. 살림의 2007년까지의 지원 통계를 보더라도 내과 29%, 산부인과 22%, 기타 49%로 나타나 산부인과 보다는 다른 곳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안정한 건강 상태가 곧 직장 생활과도 직결되어 건강 문제로 다시 실업 상태에 놓여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현금 급여 형태의 의료비 지원보다는 다른 형태의 정책적 지원들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면 시설 입소자에 대해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의료급여 보장체계로의 편입을 통해 의료비 지급을 가능하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자활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장년층 여성들의 경우 집결지에 들어오게 된 사연들도 다양하고 집결지에 있었던 기간들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적게는 10년 많게는 30-40년 성매매 일을 한 사람들이다. 여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업소에 있었기에 탈업소와 직업 훈련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며, 특히 취업 시 고령의 나이로 일용직조차도 구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 등 단순직에 취직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로 오랫동안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년층 집결지 여성에 대해서는 특화된 자활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결론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시작부터 종결된 시점, 그리고 2009년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내의 심한 반발과 성매매 여성들을 둘러싼 탈성매매의 효과성, 그리고 업소 안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 논쟁이다.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거 제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여성들이 왜 탈성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성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가 이 여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녀들을 통해서 사회가 취할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가? 사회적 지지망은 과연 그녀들이 신뢰할 수 있을만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집결지 사업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이고 여성들이 진정한 자활을 이루기 위한 탈성매매의 길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권영상(2007),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단속과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김인숙(2009),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다시함께센터(2005), "다시함께센터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본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성과와 과제", 다시함께 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2008), "정부의 성매매방지 정책-지역에서 대안찾기", 지역과 함께하는 집결지 폐쇄 프로젝트 전문가 집담회.

_____(2009), 2004.11~2007.12. 부산완월동 집결지 자활지원사업백서.

윤덕경·변화순·박선영(200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근무·유은주(2006),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저해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최희경·정경숙(2009),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탈 성매매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1): 413-435.

어떤 남자들이 성구매를 하는가?

이승주(2009), 「집단적 성구매를 통해 구축되는 남성성과 남성들 간의 관계 맺기」,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최대헌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성구매자, 즉 남성에 관한 이슈에서 늘 등장하는 단골주제는 무엇인가? 성구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와 성구매자의 특징에 관한 것일 것이다. 성구매자에 관하여는 다양한 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론을 동원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은 '사회문화적 특성'과 '성구매 남성은 이러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승주의 논문은 이러한 성구매자 논의의 현실에서 집단 성구매 남성이라는 대상과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친 배경에 대한 종래 관점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그동안의 성구매자에 대한 논의의 관점을 수정하고 확대하였다.

첫째, 성매매방지법 이후 여성주의 입장으로 수렴된 '성매매는 범죄이며 폭력'이라는 정식화가 실제 성구매자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승주는 논문에서 '우리는 여기서 "성구매자는 범죄자, 폭력의 가해자" 라는 말과 자신들이 보는 성구매 사이에 먼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된다. 이런 거리는 기존의 여성주의의 언어들이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맥락을 포착하는데 있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남성지배의 실천으로써 성매매를 고발하는 여성주의 접근은 성매매 문제를 가부장제의 사회문제, 젠더 권력관계의 문제로 위치시키고 성매매의 현실을 알려내는 데 크게 기여해왔지만 성구매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취약 할 수 있는 것이다'(이승주, 4:25~5:2)라며, 성구매자가 만들어지는 조건과 주체의 특성을 볼 것을 주장한다.

둘째, 집단적 성구매를 남성성 구축과 남성들의 관계 맺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승주는 '성구매를 하는 것이 일탈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우리 사회에서 주변화된 성적 실천이라기보다는 "남자로서 할 수도 있는", "남자들은 다 하는" 일이 되는 사회적 과정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성들의 관계와 남성다움이 만들어지는 장으로 집단적 성구매를 주목한다'(이승주, 5:14~5:17).

비록 이러한 접근이 소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근원적이기 보다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지엽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구매에 관한 다양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성매매에 관한 담론은 성매매의 주 원인으로 가부장적 남성문화와 환경이 성매매를 조장, 허용, 묵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다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아시아지역 남성의 성구매 경험비율이다. 본 연구논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통계가 영국 1.8%, 스웨덴 약 13%, 이탈리아 17%, 네덜란드 13.5%, 미국 16% 호주 15.6%, 태국 75%, 캄보디아 60~70%, 일본 46.2%, 우리나라 약 50~60%로 아시아권 국가에서 남성의 성구매 경험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시아권의 특징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특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성평등지수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 글로벌 성(性)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 평등 순위는 전체 134개국 가운데 115위로 최하위에 가까웠다. 순위 선정 기준인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작년(130개국 중 108위)과 같은 0.615점을 받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성 격차 지수(GGI)는 교육, 보건, 고용, 정치 등 4개 부문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 상황을 계량화해 완전 평등을 1, 완전 불평등을 0점으로 표시한다. 한국의 성 격차 지수(GGI)는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 113위(0.520), 교육 획득 부문에서 109위(0.894), 건강・생존 부문에서 80위(0.973), 정치 권한 부문에서 104위(0.071)를 차지했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0). 즉 양성평등지수와 성구매 경험통계는 정적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구매를 하는 자 VS 성구매를 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남자들 중에서 성구매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다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성매매 문제에 대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남성 대 여성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에서 같이 존재하는 남성이면서 성구매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남성의 사회화 과정과 이해관계'를 살펴본다. 즉 남성의 생존을 위한 관계 맺기의 한 방법으로 남성의 집단 성구매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과 성구매를 경험한 남성들은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성구매를 고려해야 한다며, 결혼제도의 모순과 성의 상품화와 접대문화라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남성세계에서 상당부분 동조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주장도 역시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현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길마다 있는 노래방,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알지 못할 요상한 간판들 사이에서 잘 지내고 있는 남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동기유발요인을 외부원인과 내부책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성구매의 경우, 외부적 요인으로는 역사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관습적, 교환가치, 물신, 쾌락, 조직문화, 쾌락중심성문화, 몸에 대한 상품화, 성 생리적 특수성, 조직문화 등) 도덕적 관점, 몸, 마음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 등이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성적호기심, 성욕해소, 스트레스 해소, 법적무지, 충동조절력, 대인관계기술 등이다. 위 두 요인에서 성구매 남성들이 자기주장을 할 때 성매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부적 요인으로 자신의 성구매를 합리화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좀 더 진실에 가까이 가면 내부요인으로 성구매를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구매자들의 성구매 요인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내부적 요인을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왜곡된 남성성에 취약할 수 있으며 성구매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 할 때 개인의 책임성 보다는 사회구조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사회는 문제의 원인과 관련하여 사회구조적 배경과 개인의 책임이라는 면에서 항상 충돌이 되고 있다. 따라

서 성구매가 사회구조적 배경과 남성성에서만 설명되어지면 개인의 책임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또 최근의 추세는 집단성구매보다는 개별성구매가 더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 두 가지 배경에 대한 균형적 고려와 개입이 필요하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의 범죄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범죄이다. 즉 개인의 기질적인 요인과 함께 사회적 학습이 상당부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을 배경으로 개인은 상황에 대한 판단수준인 인식, 사고, 행위단계에 따라서 성구매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성구매는 법이 사람들의 성매매인식을 앞서가고 주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현상적 반영은 단속이 느슨하면 다시 성매매가 급증하는 반복적 순환적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은 사회구조적 개선과 아울러 성구매자들의 성향과 인식, 사고, 행위 상태를 고려한 교육·치료·처벌적 접근을 통하여 동기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이 선행될 때 성구매자들의 태도결정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법에 의한 비자발적 결정이 아닌 인간을 존중하는 자발적 결정태도로 성구매를 결정지으리라 생각한다.

논문리뷰

성을 사는 남성들: 그들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

EAVES(2009), 「Men Who Buy Sex: who they buy and what they know」

신혜수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

1. 성매매 연구의 초점: 성 판매자에서 성 구매자로

영국의 성구매 남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2009년 12월에 발간되었다. <성을 사는 남성들>(원제: Men Who Buy Sex: who they buy and what they know)은 런던의 성구매 남성 103명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로서 그들이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성매매 여성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인지를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명한 것이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매매와 인신매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이전에는 성매매 연구의 대상이 주로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이 어떠한 경로로 성산업에 유입되는가? 성산업 안의 착취구조는 어떠한가?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 등이 연구의 주된 초점이었다. 그러나 이제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서는 성을 구매하는 남성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늘고 있다.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 없고, 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영국과 미국에 있는 두 여성단체의 합동작품이다. 영국 런던의 '이브스(Eaves; 지붕에 둘러쳐진 '처마'라는 뜻)'라는 단체는 POPPY 프로젝트[1]를 통해 성적 착취나 가정에서의 노동착취를 위해 영국으로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에게 주거

를 제공하고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www.eaves4women.co.uk).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성매매 연구와 교육(Prostitution Research and Education)'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해악에 대해 연구·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www.prostitutionresearch.com). 이 두 단체가 2007년부터 같이 협력하여 성구매 남성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다.

연구방법이 재미있다. 런던의 신문에 광고를 내서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을 모집하였는데, 익명성 보장과 교통비조로 20파운드를 지불하겠다고 하자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남성들이 수백 명 쇄도하였다. 이중에서 연구에 참가할 사람을 추려서 동의서를 받고,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런던의 성구매 남성: 특성과 가치관

다음의 코멘트에서 런던의 성구매 남성들이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성매매란 손을 사용할 필요 없이 하는 자위행위와 마찬가지다."

"그것은 여자 친구나 아내를 세내는 것과 같다. 카탈로그에서 고르게 된다."

"뭐 큰일이라고. 그냥 맥주 사는 것과 같은데."

"굉장히 비싸다면 좋겠다. … 여자가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금방 아주 섹슈얼한, 성적인 존재가 된다."

"성매매에서 내가 가장 좋았던 경험은 여자가 전적으로 복종적일 때였다."

"내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섹스를 하는

1) POPPY Project는 영국 법무부 산하 형사사법개혁실(the Office for Criminal Justice Reform)에서 2003년 설립하였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와 국내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재정착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영어교육, 망명 및 이민수속 지원, 자발적 귀국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http://www.eaves4women.co.uk/POPPY_Project/POPPY_ Project.php)

것이다. 금전적인 거래다."

"나는 그녀를 punternet.com에서 발견했는데 그녀는 크리스마스 창가의 강아지 같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봐요, 남자들은 무엇이든지 또 누구든지 원하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여자를 사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성매매 여성을 찾는 것은 진짜 여성들은 참아내지 못할 짓을 그들에게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음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인스턴트 섹스죠."

"성매매는 채워지지 않는 성적 욕구를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강간은 덜 안전하고, 만약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한다거나 진짜로 좌절감을 느낀다면 하루 종일 용두질을 하는 거죠."

"성매매는 세금을 내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아무 구속이 없는 섹스다. 선물을 살 필요도 없고 한번만 돈을 지불하면 되는 것."

"그건 여기에서 합법화가 되어야 해요. 이건 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인간인 거지요. 파트너가 없으면 성매매 여성에게 가야지요."

"성취감을 못 느껴요. 보상이 없지요. 공허해요. 끔찍합니다. 나올 때는 더 공허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요. 나중에는 더욱 공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마치 이용당한 것처럼."

"성매매는 하나도 힘을 안들이고 자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편리함에 대해 지불하는 거지요,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것을 엄청 추천하지만 넘어야 할 문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성매매는 당연히 미심쩍은 것입니다. 자신에게나 사회에게나 말이지요."

인터뷰에 응한 남성들의 인구학적 특성

평균나이는 38세이며, 18세부터 70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인종은 다양하다. 약 반수(47%)는 백인 영국인, 11%는 흑인 영국인, 10%는 아시아계, 10%는 인도나

파키스탄 출신, 4%는 동유럽, 4%는 혼혈, 나머지 14%는 아프간, 호주 브라질, 중앙아메리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서유럽, 백인남아공, 미국흑인 등이었다. 88%는 자신을 이성애자로, 12%는 바이섹슈얼로 자신을 규정했다.

성적 파트너의 수와 구매 성매매 여성의 숫자

54%의 남성들이 현재 사귀거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남자들이 성을 구매하는 것은 섹스파트너가 없어서가 아니다. 77%의 남성들이 지금까지 10명 이상의 섹스파트너를 두었고, 28%는 50명 이상의 파트너를 두었다고 답했다. 성구매 횟수는 15번이 가장 많았고, 1회에서 2000번까지 다양했는데, 12%는 130명 이상의 성매매 여성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첫 성구매 연령과 상황

44%의 남성이 21세 이전에 성매매를 처음 했다고 응답했다. "남자들에게는 그것이 성장의 일부"라고 한 사람이 답했다. 첫 성구매 나이는 12세부터 58세까지 다양했다. 78%가 25세나 그 이전에 성구매를 하였다. 43%는 친구들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성구매를 했고, 2%는 가족과 함께였다. 29%는 첫 성경험이 성매매였다.

런던의 성구매 장소

27%가 성매매 여성을 찾는데 인터넷을 이용했다. 96%가 실내에서 성구매를, 36%는 길거리나 자동차 내에서도 성구매가 이루어졌다. 실내는 성매매집결지(60%), 개인집(55%), 마사지업소(47%), 에스코트 대행사(33%), 사우나(27%), 스트립 클럽(23%), 바(20%), 개인파티(19%) 등이었다.

군복무와 성구매

인터뷰한 남성들의 21%가 군대를 갔다 왔다. 이 중 26%가 군 복무중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었다.

해외에서의 성구매

영국에서의 성구매와 함께 103명 중 약 반수인 49%가 해외의 42개 국가에서 성구매를 했다고 하였다. 가장 자주 여행한 곳은 암스테르담이었다. 많은 남성들이 네덜란드나 뉴질랜드로 여행한 이유를 성매매가 합법적이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런던 남성들의 해외 성구매가 빈번한 국가 순으로는 네덜란드, 태국, 인도, 독일, 미국, 스페인, 프랑스, 중국, 헝가리, 호주, 벨기에, 브라질, 나이지리아, 스위스 등등이다. 아시아 국가로는 태국과 인도, 중국 이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라오스, 필리핀이 지적되었다. 다행히도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강간에 대한 신화와 성매매 신화의 수용도

성매매 신화의 수용과 강간 신화 수용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성매매를 용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강간에 대한 신화, 즉 "여성이 노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스를 의미한다"라든가 "도발적으로 옷을 입은 여성은 강간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를 받아들이게 된다. 성매매 여성은 강간 불가능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5%는 성매매 여성을 강간한다는 것은 개념자체가 "웃기는" 소리라고 했고, 약 반수가 강간이 성적으로 흥분해서 또는 성적 충동이 '컨트롤이 안 되서' 일어난다고 답했다. 탄로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16%는 강간할 것이라고 했다. 성매매 여성이 아닌 여성에 대한 성적 강요에 대해 37%의 남성이 거짓말로 속여서 일반여성과 섹스를 했다고 답했다. 인터뷰한 남성들 가운데 27%는 돈을 지불한 고객은 자기가 산 여성에 대해 어떤 행위라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47%의 남성은 여성은 성매매를 하는 기간 동안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성매매가 강간을 예방한다는 논리

54%가 성매매가 강간을 감소시킨다는 이론을 믿고 있었다. 성매매를 합리화하기 위해 남성들은 만약 성매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일반여성을 더 많이 강간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미국의 강간에 관한 통계를 보면 네바다 주의

합법적 성매매와 높은 강간율 사이에는 실제로 긍정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바다 주의 강간율은 미국 평균보다 높고 인구가 많은 다른 주들 보다 상당히 더 높다.

성매매 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스트립 클럽이나 마사지업소를 가본 남자들 중 19%는 18세 이하의 소녀들이 있다고 믿었다. 조사 참여자의 44%는 성매매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었다. 19%만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경제적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다르게 근본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성매매가 야기하는 심리적 해악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

103명 중 48%는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이 포주의 피해자라고 대답했다. “성매매는 강요된 것이다. 항상 신체적 강제는 아니지만 확실히 정신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포주는 여성을 정신적으로 강간하고 있는 것이다. 포주는 그들을 매우 거칠게 다룬다.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을 부탁해야만 한다.” 인터뷰 남성의 50%가 성매매 여성이 포주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성매매에 있어서 사기와 인신매매를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55%의 남성은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이 꾐에 빠지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인신매매되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강요나 인신매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3명 중 5명만이 경찰에 미심쩍은 사실을 신고했다. 익명성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였는데, 특히 가족들이 그들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남자들이 성을 사는 이유 (중복 답변)

성적 충동의 즉각적인 만족, 향락, 쾌락을 위해	32%
다양성을 추구해서, 특정한 신체적, 인종적, 성적인 타입을 원해서	21%
현재의 관계에서는 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서	20%
편리함 때문에, 헌신이나 감정적 연결이 없어도 되니까	15%

스릴이 있으므로, 타부를 깨는 걸 좋아하니까	8%
중독이 되어서	3%
남성들 간의 결속, 동료에 의한 압력 때문에	2%

포르노 이용 빈도

58%가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포르노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포르노를 볼 때 60%는 포르노에 나오는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본다고 답했다. "포르노는 나의 성적 욕망을 형성했지요. 포르노를 보며 나는 '헤이, 저게 날 흥분시키는 걸'하고 알게 되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런던 남성들이 성을 구매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것

성범죄자 명부에 기재	85%
빌보드에 사진이나 이름 게재	85%
교도소 수감	84%
지역신문에 사진이나 이름 게재	83%
인터넷에 사진이나 이름 게재	83%
더 많은 벌금	80%
가족에게 편지	79%
운전면허 정지	78%
형사처벌 강화	77%
자동차 압수	76%
ASBO(반 사회적 행동 명령)	74%
ABC(용인된 행동 계약)	73%
지역봉사	72%
교육프로그램 참석 의무화	47%

3. 연구내용 요약과 제안

성구매자들을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12개로 요약할 수 있다. 성구매자들이 성매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공략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1) 런던의 성구매 남성 103명 중 55%가 성매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꼬임에 빠지거나, 속아서, 또는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믿고 있다.

착취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규정한 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남성들의 성매매 수요를 줄이거나 없애는 캠페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의 성구매자, 또 미래의 성구매자들에게 성구매에 관한 법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2) 오늘날 성매매는 실내로 옮겨갔다. 96%가 실내에서 행해진다(성매매업소 집결지, 아파트, 사우나, 마사지업소).

103명의 성구매 및 인신매매에 관해 보고한 것에 기초해 볼 때, 더 이상 실내 성매매가 길거리 성매매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반대로 가장 취약한 여성들은 일반사람이나 경찰이 볼 수 있는 길거리에 있는 여성들이 아니라 집안에서 통제당하고 있는 듯하다. 신문에 업주나 실내 성매매 알선자가 광고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광고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3) 인터뷰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성매매를 했을 당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남자들이 외롭기 때문에 혹은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성구매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배치된다.

성매매에서 '여자친구 경험'을 하고자 하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식화 캠페인에서 강조해야 한다. 파트너를 '사는' 것이 가능하고 성매매 여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4)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하는 동안은 여성들은 전혀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강간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런던의 성구매 남성들에게는 일반적이었다. 인터뷰한 남

자의 반 이상이 남자는 성매매 여성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강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

성매매가 강간을 예방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성폭력 전문가들은 성매매가 강간을 예방한다는 신화를 확실히 깨뜨려야 한다.

5) 남성들의 29%는 성매매가 첫 성경험이었다.

인터뷰대상자 중 가장 어린 사람은 18세였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공공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확실해졌다. 이 연구에서 40% 이상의 남성이 첫 성구매 시 친구들이나 가족과 동행했다고 밝혔다. 또래 집단의 압력은 중요한 요인이다.

6) 성매매의 합법화나 성매매가 용인된 지역이 성구매를 조장한다. 성매매가 합법적이거나 홍보하는 곳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불법이더라도 성구매를 할 새로운 마음을 먹고 영국에 돌아오게 된다.

새로 제정된 영국법률이 영국 밖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약 반수의 남성들이 네덜란드처럼 성매매가 합법화된 외국에서 성을 구매했다.

7) 많은 남성들이 포르노를 보고 성매매 여성이나 일반 섹스 파트너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다른 남성들은 포르노를 본 다음 성구매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포르노와 성매매의 관계, 특히 여성과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8) 남성의 1/5이 군대에 있는 동안 성구매를 했다.

발칸반도 위기 동안에 유엔이 채택한 것과 같은 억제정책을 영국도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명단에 올리는 것이 성구매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데 남성들이 동의했다. 교도소 수감이나 신원공개도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것이다.

가장 효과가 없는 억제책은 교도소에 갈 위협이 없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성구

매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형사사법제도와 연관되어야 하며, 결코 형사적 처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 대상자의 3/4 이상이 더 중한 형사처벌이 성구매를 억제할 것이라고 했지만, 단지 6%만이 성매매로 체포되었다. 새로 제정된 법과 이전의 법이 더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0) 런던의 성구매 남성 103명의 2/3은 ASBO(반 사회적 행동 명령)이 억제책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런던에서는 거리 성매매 여성들에게 늘상 ASBO가 발부되지만 도로변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며 성매매 여성을 찾는 남성에게는 거의 발부되지 않는다. 성구매자에게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11) 인터뷰남성의 65%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을 돈 주고 산다'고 믿고 있다.

남성의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교육과 의식화 캠페인이 필수적이다. 성매매에 대한 대중교육의 방식은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류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자의 위치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2) 대부분의 남성(71%)은 성구매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성구매에 대해 때로 죄의식과 수치스러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성매매 여성을 계속 이용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숨긴다.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들과 감정적으로 얽히는 것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성구매 대상과의 공감능력의 결여로 남성들은 여성들이 진정한 성적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포함해 여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고 있다.

남성의 태도가 여성폭력을 영속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남성들 대부분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경우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구매한 여성이 인신매매 당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영국의 집결지나 마사지업소에서의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연관이 있다. 성구매를 하는 남성의 많은 수가 업주나 강요된 통제, 도주할 기회의 차단,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성구매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사회적 억제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한국의 성매매 대책에 대한 시사점

성매매가 어떻게 하면 억제될 수 있는가에 대해 런던의 성구매자들이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신원공개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없는 것은 처벌 대신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한국은 성매매로 검찰에 입건되더라도 신원공개가 안 되고, 대신 존스쿨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성매매 예방 효과에 대하여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한국 남성의 성의식과 성구매 실태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연말에 결과가 나온 뒤 영국 남성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이슈&피플

이슈 & 피플

- 미국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황의 이해
  - 「Children of the Night」 대표 로이스 리(Lois Lee) 인터뷰
- 성매매 수요(Demand)에 주목하라
  - 「Stop Demand Foundation」 대표 데니스 리치(Denise Ritchie) 인터뷰

미국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황의 이해

「Children of the Night」 대표 로이스 리(Lois Lee) 인터뷰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미국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본지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인 「Children of the Night(밤의 아이들)」의 대표로 있는 로이스 리(Lois Lee)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Children of the Night」 설립 계기와 프로그램, 미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Children of the Night」은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9년 설립해 20년이 넘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할 때, 사회문제에 대한 양적 분석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도교수님께서 인종, 기후, 인종분쟁 등에 관한 연구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학대회에 참가했었고, 그때 제1회 전국 성매매 종사자회의(The First National Hookers Convention)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는 성매매 관련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알라메다(Alameda County) 지역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자유인권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의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법에서는 경찰이 성구매자를 체포하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과는 상관없이 성매매 여성만을 체포하였던 것이지요. 이 때 저는 미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우가 점차 남성(성구매자)과여성(성매매 여성) 간의 차별 문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감지하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성매매를 했어도, 여성은 체포, 구금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반면, 남성 구매자는 경찰의 수사권 밖에서 자신의 모험담(성매매 경험)을 동료와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사회적 지위 상승을 경험합니다.

LA로 돌아와 저는 변호사 데이비스(R. J. Davis)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경찰청(Los Angeles Police Department)과 로스앤젤레스 보안부(Los Angeles Sheriffs Department)의 성매매 관련 경찰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는 LA에서 성매매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려고 하였으나 소송에서 승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위와 유사한 소송을 샌 버나디노(San Bernardno), 샌 디에고(San Diego), 오렌지 카운티 (Orange County)에서도 조직하였습니다. 그때 헌법소원 소송의 피고인 중 한명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한 여성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한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제보했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 힐사이드 스트렌글러스(Hillside Stranglers)[2]로 알려졌고, 이 때 이 여성은 17세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본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법 집행을 보았고, 이러한 현실이 저를 이 일에 매진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그다지 많은 이해와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연구자금 지원, 성매매 여성을 위한 거리 프로그램 및 최초의 핫라인 설치, 관련법 개선활동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1979년에서 1981년 사이 250명 이상의 성매매 유입 청소년이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들을 가정과 그룹홈, 정신병원, 마약치료소 등에 머물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성과 관련한 피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1981년 할리우드 중심에 길거리 아동을 위한 드랍인센터(Drop-in Center)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이후, Travelers Aid, Salvation Army, Los Angeles Youth Network등의 기관이 저희의 드랍인센터(Drop-in Center)를 모델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밴누이스(Van Nuys, 캘리포니아주)에 「Children of the Night」을 설립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까지는 그 후 8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2. 「Children of the Nigh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성매매와 관련한 24시간 무료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 보호소의

2) 1970년대 후반 12세에서 28세 사이의 수십 명의 여성을 4개월 동안 납치, 고문, 강간한 사건으로 그 당시 미국 전역을 경악시켰던 사건임(번역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홈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은 현장학교(On-site school), 사례관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 밖에도 입소아동들이 면역검사, 임신여부검사, 도말표본검사, 성병검사, 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검사 및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소 아동·청소년이 18세가 되면 장기 진로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이들 중 일반적으로 적어도 5명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밖에 직업훈련학교나 독립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개선 프로그램도 장기적 돌봄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퇴소한 아동들에게도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hildren of Night」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현재 약 60% 가량입니다. 이런 수준의 성공률은 현장 학교를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보호관찰 공무원, 법원 관계자들은 아동들이 저희 단체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소년원에 수감되었을 것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사실 몇몇 아이들은 청소년 사법 시스템의 감호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를 찾고, 다시 성매매나 업주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이 개입하기 이전(1990년 이전)의 성공률은 80%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팀을 구성해서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다녔고, 아이들은 핫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혹은 살 곳이 필요해서 자신이 직접 우리 단체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빌딩과 장비는 구비하고 있으나 임금과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아동의 수는 자금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와 직결됩니다.

3.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학업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립과 자활 과정으로 단절된 학업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가 위기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Children of the Night」의 현장학교(On-Site School)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며 학생들의 자립과 치료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997년 「Children of the Night」에서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승인받아 현장학교(On-Site School)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학교(On-Site School)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Children of the Night」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각 아이들은 영어, 수학, 사회과학 등의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년 몇몇의 학생들은 LA과학박람회에 참여하는데, 몇 년 전 한 학생은 경쟁부분에 참여하여 "가작(honorable mention)"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장학교는 SAT(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 준비, 대학진학 안내, 등록금지원 안내, 대학방문 및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2008년에는 현장학교(On-Site School)가 (미국 고등학생들이 SAT에 대비하기 위해 치루는) 예비 대학수학능력평가(Preliminary 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장으로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현장학교(On-Site School)는 아이들이 오면 이전 다녔던 학교의 출석표나 성적표 등을 모아서 학점 인정이 가능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장학교(On-Site School)의 목적은 각각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모든 과목에 대해 적절한 수준을 가지고 나이에 맞게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다면 그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다. 다양한 교육수준과 독특한 학습 스타일을 접목할 수 있는 특별한 학습 환경을 가지고, 개인교습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거나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기도 합니다.

4. 미국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연령은 일반적으로 11세에서 17세 사이입니다. 이들 중 거의 모두가 이미 가족, 친구, 이웃, 보호자들로부터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매매로 유입된 아이들은 사회적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들은 자신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이 성(Sex)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계급과 인종은 다양합니다. 사실 사회적 계급과는 상관없이 이들이 길거리 성매매를 하든, 인터넷 성매매를 하든, 아니면 성구매자 명단을 관리하는 알선자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든,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초기에 성매매로 유인한 자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종은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백인, 흑인, 라틴 아메리카계가 주를 이룹니다.

알선 업주들은 이들이 이미 어린 나이에 성적으로 학대 받았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매매로의 유입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성적 학대의 주도권을 얻는 수단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 중에는 정신병을 얻거나 강한 충동을 경험한 마약중독자도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관리하는 업주들은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마약이 업주 자신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거든요. 또한 업주들은 "자신들의" 돈을 성매매 아동이 마약에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성매매 아동이 마약에 중독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가 자신의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마약과 알코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마약에 중독된 부모가 마약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업주에게 팔아넘기는 일도 있습니다.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문제도 심각합니다. 처음으로 저희 집에 머물렀던 피해 청소년이 사실은 소년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길거리를 접수하기 이전인 1990년 이전에는 길거리 성매매의 40%가 소년 대상이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성매매 여성은 자신들의 수입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가치가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수준에 기초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돈도 폭력과 소외, 약탈, 범법으로 점철된 이들의 삶의 대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업주에 의해 여성이 통제되고 있을 경우, 모든 수입은 업주에게 돌아가고 업주는 충분히 돈을 벌면 새 출발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6. 미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자를 다른 방식으로 처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적 분석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얼마나 많은 수의 아동·청소

년이 성매매에 유입되어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2008년 워싱턴에 위치한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에 서안을 보내 성매매 경험이 있는 단기소년원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는 최근 각광받는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 비영리 단체, 연구소 등 많은 수의 기관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그 수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981년 회계감사원은 당시 미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16세 이하의 청소년수가 600,000명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구호단체(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s)는 미국에서 300,000명의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대학 주도의 연구는 실행된 바가 없습니다.

7. 향후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어린이들은 사회보장, 주거지 제공, 고아 지원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조건을 보면, 왜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 여성 그리고 조직폭력배가 되지 않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아동들을 위한 그룹홈이나 집단 거주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24시간 돌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자금이 최소 생계비의 30%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됩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길거리 및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아동보다 몇 배나 더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강간, 폭행, 약탈, 호객 등의 방식으로 보다 가혹한 상황에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학교 또한 위험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몇몇 아동들은 중학생들에 의해서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기도 합니다.

거주지 프로그램상의 현장학교(On-Site School)는 많은 수의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및 취업 서비스 또한 어린이의 국가 사회 보장 및 사법시스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18세에서 21세 사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 진로 프로그램 (Independent Living Programs) 개발과 적용 또한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이들의 피해가 성에 근간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왔습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이 청소년 시기동안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이들의 삶에 초기부터 개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법은 출산 후, 유아용 카시트가 없으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 보육원 및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프로그램도 이들을 위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Children of the Night

미국의 대표적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기관인 「Children of the Night」은 로이스 리(Lois Lee)가 1979년에 창립했다. 성매매와 관련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보호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 홈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료지원, 심리치료, 주거지원, 스포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본 기관은 지원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18세가 되면 장기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진학, 직업훈련, 진로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 www.childrenofthenight.org

성매매 수요(Demand)에 주목하라

「Stop Demand Foundation」 대표 및 창립자 데니스 리치(Denise Ritchie) 인터뷰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는 성매매에 대한 수요(Demand)에서부터 기인한다. 수요(Demand)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지에서는 성매매 수요 차단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인신매매 및 성매매방지운동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 「Stop Demand Foundation」의 Denise Ritchie 대표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여,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뉴질랜드의 성매매 현황과 관련 법규, 그리고 수요차단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Stop Demand Foundation」은 아동 성매매 및 성적 착취를 위한 아동 인신매매방지를 위해 2003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TV에서 우연히 아동 성구매 관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고,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 뉴질랜드는 물론 해외 ECPAT(End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근절) 운동에 참여하여 캠페인을 조직하고, 법률 개정 운동의 활동가로 일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정부, 법률 입안자, 집행자 및 관광산업 관련자, 시민 사회의 많은 요청을 접했습니다. 아동 성매매는 여타 다른 매매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동됩니다. (남성에 의한) 수요가 없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급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을 향한 우리의 요구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01년 12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상업적 성착취 반대를 위한 제2차 세계학회(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에 참석한 저는 연설에서 이런 "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수요(Demand)"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런 주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저는 2003년 「Stop Demand Foundation」(이하 Stop Demand)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 Stop Demand의 활동과 활동의 결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초기에는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시민 인식 전환, 교육, 법 개정, 재판 모니터링, 미디어와의 연계, 정부와 비정부간 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활동이 수요 측면에 접근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동 성착취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 문제를 지속시키고 가능케 하는 태도와 인식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환과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활동 범위를 확장한 것은 남성들의 지위의식, 권력, 여성과 아동에 대한 대상화 및 남성에 의한 종속화,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가부장적 의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한 형태입니다. Stop Demand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을 성(gender)에 기반하며 이는 무(無)에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성적 비방(성적농담, 포르노, 여성·아동의 성애화), 성적 착취(성매매, 성매매 관광, 인신매매), 성적 폭력(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성들에게도 같은 남성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우고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최근 저희 단체의 주요활동 성과로는 유명 라디오 스포츠 웹사이트상의 포르노그래피 삭제, 공공장소의 성적 비방 게시판 제거, 아동을 성애화하는 아동복 제거, 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에 성공적인 청원, 각종 캠페인과 관련 토론 주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남성을 저희 운동에 동원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무총리가 직접 이 사안에 개입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공격하고 목소리를 높인 일이 있습니다.

3. 뉴질랜드에서 아동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선고는 징벌의 효과(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와 함께 방지의 효과(성구매자와 다른 실질적 혹은 잠재적 착취자들에 대한)가 있습니다. 아동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결코 간과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 지역사회에 표하게 됩니다. 또한 Stop Demand는 "존 스쿨"(John School)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성구매자"들이 성을 구매하는 행위의 기저에 있는 자신들의 태도와 생각을 재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구매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성구매 사실을 아내 혹은 파트너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이 두 가지 조치가 형사처벌보다 훨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뉴질랜드 내 성매매 피해 청소년(아동)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피해자 구조 절차 및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구축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Stop Demand는 뉴질랜드 특정지역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활동과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활동 범위는 아동, 청소년, 가족 서비스, 주거, 취업, 보건, 복지, 인권 옹호, 경찰, 당사자 모임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는 지난 10년간의 효율성 저하로 올해 초 해체되었습니다. 협력 체제에 대한 잠재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효과적인 협력 체제 구축에 있어 결정적인 요건은 공통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부와 비정부 기관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5. 청소년 성매매를 보는 뉴질랜드 사회의 주된 시각은 어떠합니까?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성 착취의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방지운동을 하면서 접한 개인적 경험에서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동 및 청소년 대상에 대한 성착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 뉴질랜드에서 성매매가 비범죄화 되기 이전까지는 일반 개인 및 지역단체의 이러한 의견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범죄화를 가능케 한 법의 '규범적인' 본질에서 비춰봤을 때, 많은 사람들(특히 남성과 소년)이 성매매가 합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인식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행위인지 아닌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의 전체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매매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대에서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남성의 성적 특권을 지속시키는 가부장적인 시스템 하에서 항상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대상이 성인이든 아동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가부장적 시스템은 여성과 아동을 남성들의 향락위해 성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라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gender)에 기초한 심각한 성의 불균형에서 기반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은 대안적 "선택권"이 가장 열악한 여성들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강간, 살해, 폭력사건 비율이 단연 높습니다. 이는 성매매의 핵심에는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증이 깔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의 유명한 여성운동가인 산드라 코니(Sandra Coney)는 "성매매가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성 평등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최근 법제 개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 국가의에서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규범적인' 법률 제정은 남성에게 여성은 구매할 수 있는 성적 상품이 아니라는 성평등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6. 한국의 경우, 청소년 성매매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성산업의 발달 등으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청소년 성매매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합니까?

뉴질랜드에서도 인터넷 등장과 함께 섹스팅(sexting)과 같은 청소년 성관련 행위 노출 및 자신의 주요 신체부위를 공개하는 사이트, 십대와의 성매매를 겨냥한 나이든 남성들의 접근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업적 요소의 결부 정도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 성행위 상업화로 유명해진 뉴질랜드의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십대들 중 사회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젊은 원주민(마오리)층 비율이 점차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가족과 아이 양육을 위해, 그리고 생존(생계비, 마약, 교통비 등)을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7.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뉴질랜드 법체계 및 국가지원시스템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2003년 제정된 성매매 개혁법(Prostitution Reform Act)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고용하는 것과 이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고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수준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초범자"(first-time caught)의 경우 사회봉사와 같은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고, 이런 까닭에 현실은 범법자들이 면책을 받으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성 착취 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8. Stop Demand는 성구매에 대한 부분, 특히 수요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된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은 빈곤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집니다. Stop Demand는 빈곤과 다른 요인들에 의해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취약계층이 된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남성들의 수요입니다.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없을 것입니다. 남성의 수요가 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국제사회는 인신매매범들을 "악인"(the evildoers)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범은 수요와 공급 요소를 통해 이익을 얻는 '중간 상인'에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성구매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원하고 연령별, 특성별, 인종별로 다양한 여성들을 맛볼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수백명 수천명의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아동을 구출한다하더라도 또 다른 백 명 혹은 천 명의 여성이 기존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시 인신매매 됩니다. 하지만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면, 공급을 위해 인신매매되는 희생자들의 수도 그에 상응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치가 외국여성의 입국 수치를 크게 낮추고, 보안당국이 밝히듯이 인신매매범들이 기피하는 국가가 되어버린 스웨덴의 경우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궁극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9. 아동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들이 필요할까요? 또한 아동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성매매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는 인간의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낯선 곳에 보내져 인신매매범의 냉담한 대우를 받으며 지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공포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반복적인 강간과 폭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동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것과 상관없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 계층, 출입국관리자, 인권 보호 활동가, 법집행기관, 사법기관 모두에 대한 교육과 의식 고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인신매매 아동의 공급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에 대한 성 착취가 여성과 아동의 문제가 아닌 그들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남성의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남성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즉,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결코 "남성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비판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Stop Demand Foundation

2003년 데니스 리치(Denise Ritchie)에 의해서 창립된 「Stop Demand Foundation」은 성폭력과 성매매가 없는 세상을 목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표인 데니스 리치 "아동 성매매·인신매매는 전지구적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이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에게는 치명적인 불명예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이다"라며 아동 성매매·인신매매 방지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함께 행동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www.stopdemand.org

문화 평론

문화평론

•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 사회를 만들다
| 오재림
• 수백만의 다시 찾은 꽃목걸이를 기대하며
| 원민경

[서평]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 사회를 만들다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김영옥·김현미 등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오재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노동이주와 함께 결혼이주의 증가로 최근 한국 사회는 외국인 110만을 넘어선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결혼으로 인한 외국인의 국내 이주는 2000년대에 급속하게 증가하여 이제는 한 해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정도가 국제결혼이라는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결혼이주자는 그 출신국도 점점 다양해져서 초기에는 중국동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서 최근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아시아 전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중시해 온 우리의 전통적 사회의식에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국내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이제 다인종 ·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로 인한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한국 사회 가족의 형성과정과 모습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국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각계각층에서의 논의와 토론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들 또한 시급하게 마련되고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이주 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잘 사는 가정이 대다수이지만, 결혼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적인 문제점과 국제결혼을 둘러싼 국내 법·제도의 구축과 시행 상의 미흡함으로 인해 국제결혼 가정의 해체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래 <그림 1>은 2004년에서 2009년까지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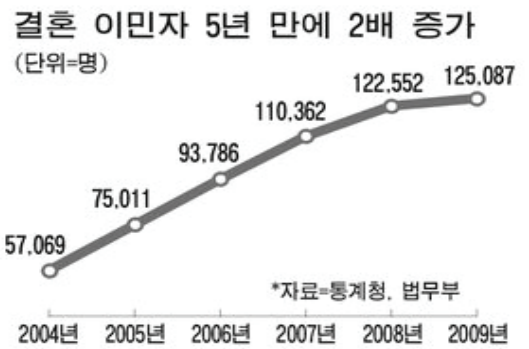

〈그림 1〉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추이 2004-2009

<그림 1>에 나타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정착한 결혼 이민자들이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 결혼이민자는 12만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5만7천여 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 중 가장 큰 비중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이다. 결혼이민자 중 중국인(조선족 포함)은 6만6천여 명으로 전체 중 52.8%를 차지했고, 다음은 베트남(24.1%), 필리핀(5.1%), 일본(4.1%) 순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이렇듯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남성과 가난한 제3세계 출신의 배우자 간의 결혼은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이 복합되어 배우자들이 다중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결혼생활의 위기는 물론 인격 장애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는 크게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 인격모독, 경제적 빈곤, 체류문제와 관련한 신분상의 불안, 한국 사회의 적응문제와 임신·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혼이민자 15만4천명을 대상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목할 만 한 점은 먼저 다문화 가족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38.4%), 100만원 미만도 21.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매우 낮았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40%정도가 취업하고 있었으며, 어학, 컴퓨터 및 정보통신, 요리 등과 관련한 직업훈련에의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34.8%와 남성결혼이민자의 52.8%가 학국생활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여성결혼이민자는 언어문제(22.5%), 경제문제(21.1%), 자녀문제(14.2%)를, 남성결혼이민자는 경제문제(29.5%)와 언어문제(13.6%)를 꼽았다. 또한 자녀양육·학습지원(62.7%), 한국어교육(60.4%), 한국사회적응교육(51.4%)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결혼을 곱지 않게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과 몰이해, 문화적 차이 및 언어의 차이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간에 겪는 갈등문제는 이주여성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가정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제도적 장치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최근 우리 사회 내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의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07년 7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마련은 여성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대비하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다문화주의'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관련 연구가 수행된 점도 가시적인 변화 중 하나인데, 예를 들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의 변화와 사회통합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들이 정책연구보고서로 발표되고 있는 점 등이 그러하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정책연구보고서들은 우리 사회 내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과 그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문제들을 조명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들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사

회' 논의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혼이주여성들 자신과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적 문제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은 언제나 국내 이주여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남겨놓은 셈이었다.

그러나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 연구들이 수행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위 말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주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9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에서 발간한 『국경을 넘는 아시아여성들』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연구 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책이 그동안 발표된 관련 연구보고서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여성결혼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여섯 편의 각기 다른 세부 주제를 다룬 연구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첫 번째 연구는 전지구적 현상으로서의 이주 및 이동을 경제 질서 및 국가 통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아시아 여성들의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는 남성 중심적 가족 질서 속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폭력이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질서와 민족적 차별에 의한 것임을 드러낸다. 세 번째 글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와 인권 보장의 현실에 대해 분석적 논의를 하고 있고, 네 번째 글은 문화 콘텐츠 분석을 통해 아시아 여성의 재현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글은 바람직한 '다문화주의'란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연구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논리와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단행본으로 묶인 여섯 편의 논문 중 세 편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적 논의를 다룬 논문인 반면, 나머지 세 편은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책의 후반을 구성하는 세 편의 논문은 아시아 여성의 재현 방식 및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다문화주의 분석 등 모두 이론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반면, 전반을 구성하는 세 편의 논문은 경험연구들인데, 현재 우리 사회 내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제의 다양성 및 복합성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포함된 글들은 이주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가정폭력 경험 그리고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과 건강 문제 등만을 다루고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다룬 경험연구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 책은 머리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05년말부터 3년간 수행한 "지구적 문화 변동과 아시아 여성의 탈식민지적 경험 : 학문으로서의 '아시아 여성학' 범주 구성" 프로젝트의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과 이후에도 2014년까지 아시아 여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엮어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용상의 아쉬움은 앞으로 발표될 후속 연구 결과에 대해 더욱 큰 기대를 갖게 한다.

◉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평] 수백만의 다시 찾은 꽃목걸이를 기대하며

『다시 찾은 꽃목걸이』, 소말리 맘 저, 퍼플레인, 2009.

원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원

UN의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성매매 등 성적착취,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노예나 노예와 유사한 행위,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하고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또는 상대방의 열등한 지위를 악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926년 노예제 협약(Slavery Convention)을 비롯하여 아동권리 협약(The 1989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있는 UN의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까지 이미 많은 국제법규가 인신매매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현실은 이러한 국제 협약과 규약의 존재를 비웃고 있는 듯하다. UN은 인신매매의 약 80%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매매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다. 매년 12만 명의 여성과 아동이 서유럽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전 세계에서 매년 60~80만 명이 국내외적으로 인신매매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그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며, 여성들 중 절반은 미성년자라고 추정하고 있다(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2005).

여성과 아동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문제는 어제 오늘 새롭게 시작된 문제가 아니며, 현재에도 국제 문제의 큰 이슈로 자리한다. 이는 과거의 문제

이자 현재의 문제이고,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찾은 꽃목걸이』의 저자인 소말리 맘의 글에서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심각성과 현재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시 찾은 꽃목걸이』는 캄보디아에 있는 아동 및 여성쉼터인 '아페십'(AFESIP CAMBODIA)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소말리 맘의 자전적인 글이자, 전 지구적으로 비참한 환경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이다. 소말리 맘이 어린 시절 겪은 강간의 경험, 10대 중반에 시작된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이 다행히 그녀의 인생에서는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그녀가 겪은 고통이 현존하는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생각되기에 『다시 찾은 꽃목걸이』는 참으로 쉽게 읽고 내려놓기 어려운 책이다. 캄보디아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유괴당하고 팔려나가고 있으며 프놈펜 성매매 업소 여성의 1/3이 어린 여자아이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젊음을 되찾기 위하여, 에이즈를 고치기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수많은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자아이들의 몸을 유린하고 있다.

강간 당하고 약물에 중독되어 성노예의 삶을 사는 아이들의 의지는 쉽게 무너지고 아이들은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재빨리 터득하게 된다고 한다. 도망칠 수도 없지만 아이들은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에 집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다고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존재일 뿐,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부모들이, 친척들이 직접 아이들을 성매매 업소에 팔고 아이들의 영혼에 상처를 준 대가를 매주, 매달 챙겨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소말리 맘이 구출해내서 아페십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던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다시 성매매 업소에 팔기 위하여 아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할 정도로 아직까지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의 인권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소말리 맘은 캄보디아의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처한 생지옥과 같은 상황이 30년 동안 폭격과 대학살, 기아를 경험한 결과로 생긴 '도덕성의 파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과 기아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도덕성의 파탄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동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온 몸으로 막아 보려고 소말리 맘이 활동하고 있고, 그녀의 활동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으나 그녀의 힘으로 구출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성노예 상태의 아이들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다.

처음 소말리 맘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작은 성매매 업소 조차 문을 닫게 만들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커다란 성매매 업소가 소말리 맘의 도전 대상이 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캄보디아의 대규모 성매매 업소는 아직도 활동가인 소말리 맘의 수양딸을 납치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배후에 권력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소말리 맘은 이 책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성매매 업소에 감금된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아이들을 찾지 못했던 사례들, 아이들을 납치하여 성매매를 시킨 성매매 업소 업주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개치고 다닌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에서 겨우 탈출한 여자 어린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자 경찰관이 아이를 안심시킨 뒤 데려간 곳이 조금 전 탈출한 성매매 업소였던 경우까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캄보디아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문명국에 가깝다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성매매 업소 관할 경찰관과 성매매 업소 업주가 유착관계에 있어 성매매 업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가 성인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억압하여 성매매를 시킨 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경미한 처벌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동을 인신매매하여 성매매를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 캄보디아보다는 낫다고 자위하는 사이에 여성의 몸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성매매 알선업은 팽창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며, 남성의 성욕이 여성과 아동의 영혼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지구상에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아이들과 여성을 보듬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소말리 맘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내며, 그녀의 활동들이 더 큰 반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믿으며 이 글을 마치겠다.

여성과 인권

2010년 상반기(통권 제3호)

등록번호 종로사00038
국제연속표준간행물(ISSN) 2093-5714

발행일 | 2010년 6월
발행인 | 이화영
편집인 | 윤정오
기획 및 편집 | 김옥녀, 최선화
기획자문위원 | 변혜정, 윤덕경, 원민경, 홍춘희
발행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HUB빌딩 102동 409호
전화 02-3210-1050
팩스 02-3210-1051
홈페이지 http://www.stop.or.kr
인쇄 | 대원문화인쇄

※본『여성과 인권』은 연 2회 발간되는 성매매 방지 정책전문지로서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